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국제학석사 학위논문

1950년대-1980년대 한국 가족법 개정운동에서의 이태영의 사상변화 분석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다카하시 히나코

Master’ s Thesis of International Studies

Lee Tai-young’s Thought Changes in the 1950s-1980s Family Law Reform Movement

August 2021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studies Major
Hinako Takahashi

1950년대-1980년대 한국 가족법 개정운동에서의 이태영의 사상 변화 분석

지도 교수 은기수

이 논문을 국재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다카하시 히나코

다카하시히나코의 국제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8월

위 원 장 오윤아

부위원장 문현아

위 원 은기수

초 록

현대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여성을 둘러싼 중심적 사상으로 대두되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성 평등 실현을 위해 많은 운동과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활동을 주도하는 지침이 될 수 있는 주요 운동가들의 사상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사상을 살펴보면 시대별 사회 상황에 맞게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초기 페미니즘의 주요 운동가인 이태영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운동에 참여하였는가, 그리고 그 사상이 어떤 변천을 거쳤는가 하는 질문을 기점으로 한다. 이 분석으로는 이태영이 가족법 개정운동 등의 활동의 길에서 시대와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추어 사상을 변화시키고 이념적 성장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에 적응한 남녀평등 관념과 가족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한다. 이를 전제로 그녀가 시대 상황에 맞춰 사상을 적응한 과정에 대한 상세한 파악을 시도한다. 이 사상변천분석을 통해 그녀의 사상적 변화를 각 시대의 가족법 운동과정 및 역사적 배경과 대조적으로 검토하고, 당시 운동과정에서 이태영의 위상에 대해 평가, 논의한다.

이태영은 가족법 개정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50년대와 1970년대 사이에 특히 큰 성 평등 사상적인 측면에서 성장적 발전과 발달을 경험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남녀평등사상을 발전시키는 형태로 가족사상, 가족론 논설을 통해 페미니즘 사상을 표명하고 방식은 크게 전환되었지만 그 기축이 되는 사상은 1950년대~197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녀의 사상의 변천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하기 위해 사용한 이론적 접근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전후의 이태영의 페미니즘 사상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하는 페미니즘 이론의 유형이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론 유형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와, "래디컬 페미니즘"의 두 가지다.

둘째, 1980년대 그녀가 강조한 가족사상에서 보여준 가족의 권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Herbst(1952)에 의해 정의된 가정사항의 결정과 실행상황을 바탕으로 한 부부간 행동권력의 유형을 적용한다. 이는 행동결정자와 실행자의 조합 차이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부부 누가 결정자로서의 권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점을 중시하며, 4가지 유형의 내역은 '남편우위형', '아내우위형', '자율형', '공동공유형'이다.

이 이론적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면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장기간 전개된 가족법 개정운동 및 여성운동에서 이태영의 논리에 나타나는 사상변천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제1단계에서는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의 가족법 개정 운동에서 기초목표로 남녀 모두의 제도적 평등을 추구하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남성을 둘러싼 문제보다 여성을 둘러싼 문제를 우선시하여 논리사상적 편중이 있는 등 불안정을 보였다.여기서는 이 시기 이태영의 페미니즘 논리사상을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완전한 정착까지의 도입기 패턴으로 정의했다.

2단계인 1970년대 전후 시기, 이태영은 1단계보다 남녀 모두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이념을 강화하고 운동과정에서도 남녀 협력적 행동을 통해 여성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이런 변화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적 사상의 정착, 성장적 발전으로 볼 수 있다.

3단계는 1980년대 이후 가족법 개정 운동이 확산되면서 차세대 운동가들이 새로운 논의를 제시하는 가운데 이태영도 단순히 남녀평등을 주장하던 방식에서 가족 부부 등의 가족론 주제를 통한 사상 주장으로 전환됐다.부부역학관계 이론과 검토할 경우 부부간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한 공동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결정과 실행이 부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공동공유형(The Syncratic Pattern)에 해당한다고 분석한다.이를 페미니즘 사상으로 검토할 경우 부부간의 공동성을 중요시한 입장을 고려하면 여전히 남녀의 동등하고 공동적인 권리행사 및 참여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상을 기축으로 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 시대 이태영 사상의 형태 변천과 각 시기별 가족법 개정 운동 과정을 대조적으로 평가하여 그녀의 운동에 대한 위상을 논의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크게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첫 단계로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전후까지의 운동 과정을 보면 운동 자체가 매우 작고 취약한 가운데 이태영과 그의 사상은 일정한 부족과 불안정성이 있었지만 높은 선진성과 영향력을 지닌 입장이었다고 분석된다.

두 번째 단계로 1970년대 전후 시기의 운동과정과 함께 검토할 경우, 이 시기 이태영의 자유주의 페미니즘적 의식을 강화한 사상의 변화는 같은 시기 가족법 개정운동 과정에서의 남녀연대를 추진하는 경향 등과의 일치성이 높다.이는 당시 그녀가 운동단체 부회장으로서 위상과 영향력을 대내외적으로 높인 시기였고, 이에 따라서 그녀의 사상 변화가 운동조직 안팎으로 영향을 미쳐 운동과정 자체의 방침적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단계인 1980년대에도 이태영이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당시 여성계의 논설 트렌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했다. 그러나 이우정 한명숙 등 신세대의 활동가가 노동 등의 "결혼"이나 "가정"이란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난 주제를 제기하는 한편 이태영은 여전히"가정"을 주요 주제로 삼아, 사람들과 "결혼"혹은"가족"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을 표명했다. 이는 이태영의 논리사상과 운동에서의 목적 또는 방침이 일정한 일치성을 보였던 1, 2단계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시기 이태영이 1990년대 은퇴를 앞두고 활동을 축소하고 참고 자료도 한정적이었다는 것, 또 가족법 개정운동을 비롯한 여성 운동에 참여하는 활동가 인사도 크게 전환한 시기임을 고려해야 한다.

주요어 : 이태영 여성주의 페미니즘 여성운동 가족법
학　번 : 2019-29155

목 차

제 1 장 서 론 7

제 1 절 연구배경 7

제 2 절 기존 연구 검토 9

제 3 절 연구 방법 및 논문 구성 12

제 2 장 젠더/페미니즘과 가족유형의 이론적 고찰 15

제 1 절 한국에서의 대표적 젠더/페미니즘 이론 15

제 2 절 가족 역학관계의 유형 검토 22

제 3 장 이태영의 남녀편등/가족의식 형성 배경 27

제 1 절 서구식 기독교 교육 및 가정환경의 영향 27

제 2 절 법학 및 법조인 직무와 남녀평등/가족의식의 실천 32

제 4 장 1950년-1970년대 운동과정과 이태영의 젠더 사상 분석 .. 39

제 1 절 한국 가족법개정운동과 젠더 사상 39

제 2 절1950년대-1960년대 불안정한 운동과정과 페미니즘 사상 "도입기" 41

제 3 절1960년대-1970년대 연대를 통한 운동과 자유주의 페미니즘 의식으로의 변천 52

제 5 장 1980년대 운동과정과 이태영의 가족론을 통한 젠더 사상 분석 63

제 1 절1980년대 개정운동 과정과 논리 다양화, 차세대 운동가의 등장 63

제 2 절1980년대 이후 이태영의 가족역할론을 통한 젠더 사상 분석 67

제 6 장 결론 74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74
제 2 절 연구의 의미 및 한계점 78

참고문헌 80

Abstract 8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페미니즘 운동의 추진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남녀평등한 권리 획득의 실현은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운동의 핵심이 되는 중심 운동가의 사상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논쟁 주제가 되어 왔다. 서구의 예를 들면, 1792년에 영국의 메리 울스턴 크라프트가 기존 사상가들의 여성차별주의를 비판한 "여성 권리의 옹호(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를 출판했다. 이 사상을 출발점으로 사회적 여성의 권리가 대중에게 명확히 인식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영국이 여성 참정권 운동을 시작한 국가가 되었다. 또한 프랑스 혁명 시기인 1791년에는 "여성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Woman and of the Female Citizen)"을 여권운동가인 올랑프 드 구주가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프랑스혁명의 성과물인 인권선언과 신 헌법에서 여성의 권리가 소외되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운동가들의 사상은 근대화로 가는 서구권에서 여성이 사회적 혹은 법적 위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널리 인식시켜 여성운동의 발전과 확대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그동안 남녀평등 실현을 둘러싼 역사적 흐름은 운동가들의 사상과 운동이 결합돼 함께 진행됐다고 할 수 있다. 그 사상도 사회적 발전이나 사상의 다양화와 함께 시대별 변천을 반복해 왔다.그리고 운동의 방침이나 과정 자체도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유교문화를 내포하는 사회적 관습이 보존되어 왔다. 오랫동안 여성들은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확대 가족과 남존여비적 관행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남녀의 성별적 역할은 명확히 구분되어 남성은 공적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개척하여 유지하였다. 반면 여성은 사회적 권리를 갖지

않고 가문과 가족을 유지 계승하는 사적 측면에서의 역할만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존재로 억압받았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여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급속도로 도약하였다. 또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남녀평등을 추진하기 위한 운동은 다양한 형식과 주장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테면 현대에 와서는 성별을 초월한 매우 활발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남녀의 상관없이 사회 전체를 운동에 포함하려는 태도가 여성운동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여성운동이 정체 상태에 있는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 여성운동을 소개하는 보도를 통해 한국 여성운동의 활발성리 주목되면서 한국에서의 페미니즘을 배우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운동가들의 내부적 사상 충돌이나 백래시는 사회운동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매우 활발하고 광역적인 한국의 여성운동 전개와 성공의 사상적 핵심은 무엇일까?

한국 여성운동의 출발점은 가족법 개정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법이란 혼인관계나 친족관계, 재산상속 등 일정한 가족 및 친족 간의 공동생활 활동과 재산 계승에 대해 규정하는 법규이다. 한국의 가족법은 민법의 일부 구성원으로 1960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내 교육의 보급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호주제와 같은 관습법 이래의 가부장적 가족 규범 아래 규정된 가족법 제도가 여성을 소외시킨 매우 남성 중심적이고 비민주적인 제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의식의 확산은 국내 여성운동의 기점이 되었고, 가족법에 의한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는 여성들에 의한 50여 년에 걸친 가족법 개정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 가족법 개정운동의 계기를 만들고 운동에 인생을 바친 중심인물이 이태영이다. 한국 최초의 여성 법조·변호사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인 그녀는 한국가정 법률상담소를 설립하여 주로 가정에서의 법적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또 민법 시행 이전부터 가족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가족법

개정운동이 본격 시작된 이후에도 호주제 폐지 운동, 동성동본 결혼 실현운동 등 중심 활동을 직접 주도했다. 나아가, 그녀는 책과 논설, 홍보책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교 질서에 기인하는 성차별 퇴치와 남녀평등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논문은 이태영 자신이 가족법 개정운동과 이에 부수된 여성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사상이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에 주목한다. 이번 이태영의 사상 변천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가족법 개정운동의 시조로 주도적 입장에 있었고,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회장을 지내는 등 당시 여성운동의 근간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던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그녀가 여성계의 활동이 매우 소규모였던 초기 195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나중에 등장하게 될 여성 운동가들의 논리에도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이 논문은 이 사상변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시대 가족법 개정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대조적으로 검토하고 운동과정상 이태영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분석에서는 이태영의 논설문등 문서 자료를 통해 해방 후 한국 가족운동과 여성운동의 시대별 특징과 그녀의 젠더 및 가족에 대한 사상의 변천을 페미니즘 이론과 가족 유형 이론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저자는 이태영이 운동 과정 속에서 서기축이 되는 사상을 가지면서도 시대 변천에 맞게 사상을 변화시키고, 당시 상황에 적응한 젠더 관념과 가족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다. 이 과정을 이론적인 접근으로 분석하며, 그녀가 시대에 맞추어 사상을 적응시키고 온 노력과 유연성 있는 의식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제 2 절 기존 연구 검토

가족법 및 가족법 개정운동에 대해서는 운동 당시 및 운동 이후에

기록된 자료가 많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자료로는 가족 법률상담소의 "가족법 개정 37년사(1992)"와 "가족법 개정 60년사(2009)" 등의 운동 기록과 한국 여성개발원의 "개정 가족법과 가족법 개정운동에 관한 연구(1991)" 등의 운동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있다. 또 운동 당시 일반 홍보용 기고문이나 소책자 칼럼 등 당시 운동가들의 주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일차 자료도 많다.

한국의 가족법의 역사는 1960년 민법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의 관습법 시기와 그 이후의 성문법 및 제정법 시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운동 이후에 연구자들이 이 두 시기 혹은 이 중 어느 시기 가족법의 변천이나 가족법상에서의 여성의 지위 변천, 그리고 페미니즘 운동과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한 기존 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우선 한국 가족법과 그 개정운동에 대해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분석한 기존 연구 중 대표적인 것이 서울대 법학대학 양현아 교수의 '한국 가족법 읽기 –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2011)'이다. 이 연구는 가족법 제정 및 개정의 역사적 분석과 가족법 자체의 텍스트 분석이라는 두 가지 연구 방법을 이용해 한국 가족법과 여성의 연관성에 접근했다.

이 책은 첫째로, 역사적 측면의 정리와 분석으로는 가족법이 관습법이었던 일제 시기의 상황과 1945년 이후 민법 제정 이전의 가족법 상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1950년대 민법 제정 과정, 이태영 변호사를 비롯한 운동가와 많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족법 개정운동에서의 유림 등과의 공방과 홍보활동을 포함한 강력한 활동에서부터 2005년 호주제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고 여성운동의 시발점으로 한 가족법 관련 활동을 고찰하였다.

양현아는 이 가족법의 역사적 맥락, 특히 1962년, 1977년, 1989년으로 지속된 초기 개정운동을 분석하면서, 이 시기의 개정운동을 성별 불평등의 투쟁이라는 측면과 "전통"과 "근대성"이라는 이원적 논쟁이 공존한 것이었다고 정의하였다. 개정운동에 있어서 반대파인 전통주의자에게 전통이란 도덕성 있는 생활양식의 유지를 의미하는 한편, 근대성은 이러한

도덕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반대로 개정론자에게 근대성은 민주주의 및 인권주의와 연결하여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고 전통은 유교적 관념과 식민지적 유산이 공존하는 모호한 개념이며 가부장제와 연관되어 평등의 장애가 될 뿐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전제로 이 '전통'과 '근대성'의 이분법이 운동을 통해 전통주의를 강화한 정부, 입법부, 유림뿐만 아니라 근대화론자들에 의해서도 강화된 것이라고 교수는 평가했다. 즉 당시의 여성운동가들과 유림이 모두 민주주의·인권주의적 평등이라는 근대적 관념을 논거로 이용하고, 전통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독해를 통해서 가족법상의 식민지주의적 유산과 가부장제가 결합된 "전통"과, 가족법 제도상의 남녀평등을 논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교수는 가족법에 대한 텍스트 분석에서는 남성 측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민법 가족법 부분의 법문을 "여성으로서" 읽으면 어떤 의미가 발생하는가라는 시각에서 "페미니스트 법 읽기"를 시도했다. 교수는 민법의 가족법 부분이 제4편 "친족"과 제5편 "재산·상속"으로 나뉘어 편성된 것에 상응하도록 가족법을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로 나눈 뒤 개정운동에서 변화한 한국의 가족법이 규정하는 가족제도에서 여성의 위치와 재산관계에서 여성의 위치를 분석했다.

또한 변호사 및 여성운동의 중심적 운동가, 그리고 남녀평등 계몽을 비롯한 교육적 측면에서 많은 공을 세운 이태영 개인에 대해서도 그녀의 영향력과 사회적 공헌을 언급한 서적과 연구 자료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법학적 시각에서 그녀의 공적에 주목해 왔으며, 가족법 분쟁에 기여한 변호사로서 이태영의 활동을 언급하거나 그녀가 설립한 가족법률상담소 및 기타 여성 단체에서의 리더십을 평가해 왔다.

양현아는 "호주제 폐지 여성인권 - 이태영 변호사가 남긴 유산(2006)"에서 전술한 가족법 개정에 관한 연구서적과 같이 가족법 개정운동의 과정을 정리하면서, 법학자로서의 시점에서 근현대 사회에서의 가족법 개정의 중요성과, 그에 공헌한 운동의 주도자로 이태영이 유교적 혹은 전통적인 인습에서 시민들을 해방 시켰다는 성과, 한국에서의

여성주의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평가했다. 하희정은 "시대를 위한 저항과 변론 - 첫 여성 법조인 이태영 변호사의 삶과 고뇌(2012)"라는 주제로 그녀의 남편 정일형의 추모 강연회에서 주장을 펼쳤으며, 주로 이태영 변호사 자신의 법조·정치적 측면에 주목하여 그녀의 삶과 활약을 시대의 흐름과 함께 정리하였다. 또한 허도산의 "한국의 어머니 이태영(1999)"는 이태영의 인생과 국가와 정치에 대한 법의식 등을 기록하며, 민주화와 남녀평등을 향한 근대사회에서의 그녀의 변호사 및 사회운동가로서의 활약에 대해 서술하였다.

가족법 및 가족법 개정운동에 대한 페미니즘적 시각의 분석과 주도자로서 운동을 이끈 이태용 자신의 법조인 및 사회운동가로서의 공적을 평가한 기존 연구들은 매우 유익한 자료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자료는 가족법 개정 운동과 이에 부수되는 여성운동의 핵심이 되는 젠더관이나 가족관 등 이태영의 사상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살펴본 것이 적다는 점에서 한계점과 과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태영의 사상에 대한 연구로는 이유나의 "해방 후 이태영의 여성 인권론과 인권, 민주화 운동(2017)"이라는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는 이태영의 여성관과 민주화를 지향하는 정치적 사상에 주목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남성과 가족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상과 그 상세한 변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태영의 여성관 분석에 대해서도 페미니즘 이론 및 가족관계 이론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등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할 여지가 있다.

제 3 절 연구 방법 및 논문 구성

본 논문은 초기 페미니즘의 주요 운동가인 이태영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운동에 참여하였는가, 그리고 그 사상이 어떤 변천을 거쳤는가 하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 분석은 이태영이 가족법 개정운동 등 활동 과정에서

시대와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사상을 변화시키고 이념적 성장을 통해 당시 상황에 적응한 남녀평등 관념과 가족관을 갖고 있었다고 가정한다. 이 질문을 전제로 이태영이 시대에 맞게 사상과 운동방침을 적응해 온 과정에 대한 상세한 파악을 시도한다. 이번에는 이태영의 논리를 파악하는 자료로 그녀가 집필한 서적 및 논설문 등 문서자료를 분석하여, 그녀의 남녀평등 의식 변천을 페미니즘 이론과 가족(부부) 행동 권력 유형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페미니즘 이론 및 가족(부부)의 행동에서의 역학관계 이론에 대해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젠더 사상 및 가족 사상의 유형 분류 기반이 되는 이론적 배경 수립을 도모한다. 둘째 성장 과정 및 성인 이후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본 사상 형성 배경 파악을 시도한다. 또한 이태영을 중심으로 한 운동가들의 1950년대 가족법 개정운동 시작부터 1980년대까지의 개정운동 및 여성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유고집이나 논설, "새가정"등의 홍보지, 가족 법률 상담소 기관지 등의, 이태영 자신이 가족법이나 개정운동, 여성의 지위, 남녀평등, 가족관계에 대한 주장을 계속적으로 전개한 문장 미디어 매체를 1차 자료로서 분석한다. 각 시기별 주장의 방향성 차이와 그녀의 당시 활동 내용과의 대조, 페미니즘 이론 및 가족 유형 이론의 적용을 통해 그녀의 사상적 변천상을 분석한다.

논문은 총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여성운동 과정의 사상 연구의 중요성과 더불어 연구 목적과 가설, 기존 연구 상황을 해설하였다. 제2장에서는 분석에 사용하는 페미니즘 이론 및 가족(부부)의 행동 역학 관계 이론에 대해 기술한다. 3장에서는 이태영의 인생과 함께 그녀가 남녀평등 사상을 양성한 배경을 살펴본다. 4장, 5장 에서는 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이태영이 활동했던 195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의 가족법 개정 운동에서의 논리 변화를 해석하면서, 그녀의 논리적 특징을 페미니즘 이론 및 가족 유형을 적용해 보다 명확한 파악을 시도한다. 제6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검토한다.

제 2 장 젠더/페미니즘과 가족유형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한국에서의 대표적 젠더/페미니즘 이론

1장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페미니즘, 여성운동 추진파에서의 논리와 의식은 역사적, 세계적으로 중요한 논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논리와 의식은 페미니즘 운동의 방침과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요인이다. 여기서 가족법 개정 운동의 초기 과정, 특히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이태영의 젠더에 대한 의식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주요 페미니즘 이론을 정리한다.

페미니즘(feminism)은 남녀 간 불평등과 차별을 인식하고 시정해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사상운동 이론의 총칭이다. 페미니즘 이론의 구축 과정에서는 무엇을 기초적인 "지식"으로 보느냐 하는 점이 근본적인 질문이다. 사회나 기존의 연구에서 기본적인 '지식'으로 설정되는 것,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인 지식으로 간주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거기서 선택된 지식이 '진리'로 정당화되는 상황에 내재된 남성 중심적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지식과 이론의 출발점이다.

페미니즘 이론은 남녀 차별을 없애고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공통 목적으로 하며 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젠더 불평등이 왜 생겨나고 지속되는가 하는 점에 대한 고찰의 관점은 매우 다양성이 있고, 서로 반발하는 입장을 취하는 등 유동성이 있는 이론이기도 하다. 이러한 페미니즘 이론의 유동성 및 다양성은 그 형성 과정에 기인한다. 페미니즘 이론을 정리할 때 이 과정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시대별로 따로 떼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물결(Wave)"[1]로 구분해 해석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주요한 페미니즘

[1] Rampton, M. (2020, July 13). Four Waves of Feminism. Pacific University. https://www.pacificu.edu/magazine/four-waves-feminism

이론이 확립되는 배경으로,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페미니즘의 네 가지 물결 중 제1 및 제2의 물결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페미니즘의 제1의 물결은 19세기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난 남녀평등적인 시민권를 요구하는 운동에서 시작된 것이다. 대표적인 운동은 1860년에서 1920년에 걸쳐 미국에서 확대된 여성 참정권을 요구하는 운동이다. 이는 서구 국가들 가운데 최초의 본격적인 정치 운동이었다. 당시, 정치와 같은 사회적 지위는 당연히 남성이 지배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여성들의 사회적 권리나 사상은 중요시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시민혁명으로 획득하고 확립된 만인의 평등이라는 보편적 원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 사이에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었다.

1792년 메리 월스턴크래프트가 혁명적인 "여성 권리의 옹호(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를 발표하면서 인류 한쪽에서 다른 한쪽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전제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여성들은 사회적 억압에 대한 저항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1848년 뉴욕 주 세네카 폴스의 교회에 모인 200여 명의 여성들이 선거권 등 구체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12조항 결의를 채택하는 등 확대적인 운동을 전개했다. 이런 여성들에 의한 운동을 통해 헌법 개정을 실현하였으며, 1920년에 여성들이 참정권을 획득함으로써 활동을 마쳤다.

페미니즘의 제1의 물결에서의 목표는 “여성은 물건이 아니라 인간이다” 라는 점을 인식시키려고 하는 매우 단순한 것이었다. 이 시기의 정치적 권리 요구는 참정권이나 법적 평등과 같은 보편적 인권 개념에 여성을 포함시킨다는 목적의식에서 실행되었다. 한편, 이 시기 페미니즘의 한계로 활동의 관심이 백인 여성의 권리를 향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법 제도적 평등이 실현된 반면 사회 풍습과 문화적 측면에서의 남녀 차별과 여성의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배제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2]

---

[2] Kawashima, Y. (2000). Feminist Thought : From Modern to Postmodern(フェミニズム理論の現在:アメリカでの展開を中心に), Journal of gender studies, Ochanomizu University, Vol.3, pp.48

페미니즘의 제2의 물결은 미국을 중심으로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일어난 활동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의 운동은 정치적 평등성을 추구했던 제1의 물결 관점과 달리 성별로 고정되는 여성의 가정적 역할 등 여성만이 갖는 문제점을 주요 과제로 제기하였다.[3] 그 계기는 같은 시기 미국에서 민권운동과 베트남전에 대한 항의운동이 전개되었고, 운동 과정에서 남성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여성들이 식사 준비 등 남성들의 지원만을 담당하는 등 성별에 따른 입장 격차가 명확해진 데 있었다. 이는 여성들에게 전통적인 성차별과 가족 내 여성의 역할 등 일상적으로 여성들을 둘러싼 사적 영역의 성차별을 스스로 일깨워주고 문제의식의 근간이 되었다.

페미니즘의 제1의 물결이 근대적 인권의식에 기초해 발생했고 사회제도적 측면에서의 여성들에 대한 "남성 수준"의 남녀평등 규정을 요구한 것이라면, 제2의 물결 과정이 목표로 한 것은 남성을 중심으로 한 근대사회 자체를 개혁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활동에서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4]이라는 슬로건으로 상징되듯이, 일상적으로 여성들을 둘러싼 사적 영역에서의 성차별이나 성적 피해, 성희롱과 같은 여성 특유의 문제들이 사회 전체에서 배제되어야 할 과제라고 호소한 것이다. 또한 이처럼 여성 문제가 복잡해진 페미니즘의 제2의 물결 과정은 페미니즘 이론 다양화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60년에는 여성학이라는 연구의 새로운 영역이 생겨났고, 현대 사상으로서의 페미니즘과 이후의

---

[3] Soken-Huberty, E. (2021, February 28). Types of Feminism: The Four Waves. Human Rights Careers. https://www.humanrightscareers.com/issues/types-of-feminism-the-four-waves/#:%7E:text=Three%20main%20types%20of%20feminism,dominated%20spaces%2C%20and%20promoting%20equality.

[4] 이 말은 페미니스트이자 작가인 캐롤 하니쉬가 1969년 집필한 에세이를 1970년 "The Personal is Political"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면서 널리 알려졌고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슬로건으로 선택됐다. 한편 하니쉬 자신과 일부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1970년 앤솔로지가 발표되기 이전에 이 말을 이미 사용했으며 특정 누군가에게 기인하는 문구는 아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Smith, D. M. (2012). Poets Beyond the Barricade: Rhetoric, Citizenship, and Dissent after 1960. University Alabama Press.pp.153

젠더 이론이 확립되었다. 이는 현대까지 이어지는 페미니즘 사상에도 큰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 페미니즘 이론의 다양화 과정은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 무엇인가' '남성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와 같은 관점에서 페미니스트들 사이의 장기적인 갈등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페미니즘의 제2의 물결 과정에서 확립된 페미니즘 이론은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남성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입장 차이가 있다. 페미니즘 이론은 여성차별 문제와 지식론의 쟁점화에 따라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접근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세 가지 내용은 (1) 페미니즘의 제1물결에서의 자유와 평등, 정의라는 자유주의적 원리를 계승하고 법 제도 등 공적 영역에서의 남녀 불평등, 성 역할의 사회화 문제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페미니즘", (2) 여성 억압의 근원적 원인을 여성의 신체와 성의 남성 지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경제 체제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여성차별에 주목하고, 이 가부장제 하에서의 억압의 배제를 우선적 과제로 삼는 "라디칼 페미니즘", (3) 남녀 불평등을 자본주의 제도와 가부장제의 복합적 지배와의 연관성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한국의 가족법 개정 운동의 초기 과정,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이태영의 젠더에 대한 의식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페미니즘 이론 형태 분류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번 분석 필드에서 한국에서는 세 번째 유형인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제외된다. 이는 해방 후 한국에서 반공주의 확산으로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가 중요시되지 않았으며[5],

[5] 마르크스주의를 지지하는 집단은 존재했지만 노동계급 투쟁을 중시하고 사회의 총체적 변화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유사한 사상을 가진 여성운동가들도 사회 전체의 변혁이라는 과제와 자신의 과제를 일치시키는 성향이 강했다. 또 소련과 동유럽 공산당 정권의 불안정과 몰락으로 이들 정권을 사회주의 모델로 삼았던 당시 사회운동가들은 이념적 지향을 잃었다. 그리고 많은 활동가들이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적 전망 자체를 폐기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 보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최미진 (2016).『 [특집: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와 오늘날의 페미니즘』, 마르크스21 16호, pp.15-16

이태영을 비롯한 당시 여성운동가들의 주장 속에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서 강조되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노동자를 둘러싼 문제적 등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페미니즘 운동에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유사한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전후의 여성 노동이 보급된 이후이다.[6]

이번 분석에 사용하는 현대 페미니즘 이론의 정의는 페미니즘의 다양한 시각, 문제의식, 접근법, 비전을 지닌 사상을 체계화한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여성학자인 주디스 로버의 연구 "The Variety of Feminisms and Their Contribution to Gender(1997)"에서 정의된 현대 페미니즘 이론 분류를 바탕으로 주요 논점을 적출한다.

첫째,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첫 물결'의 중심이 된 자유주의 사상의 입장에서 자본제 사회제도의 기본적 구조를 지지하면서 사회적 측면의 여성차별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며, 고전적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 있는 페미니즘 이론이다. 미국에서는 주류 페미니즘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상의 남녀평등적 접근은 시민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많은 제도적 개혁을 이뤄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상의 핵심은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권리, 특히 여성의 참정권 등 사회적, 법적 제도를 획득하는 데 있다. 여성 남성과 동등한 시민권, 정치 참여, 법 아래 평등, 교육 및 노동에서의 기회균등이 주요 개념으로 꼽힌다. 산드라 아커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성별 역할의 사회화 문제를 중시하는 접근법으로 봤다.[7] 즉, 이 페미니즘 주장의 중심 쟁점은 사회 제도상의 성 역할, 스테레오타입의 고정화 탈피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 남성에 대한 시각은 성별 차이나 생물학적 차이에 주목하기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공통된 인간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

[6] 최미진 (2016).『 [특집: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와 오늘날의 페미니즘』, 마르크스21 16호, pp.19-24

[7] Acker, S. (1994). Gendered Education: Sociological Reflections on Women, teaching and feminism.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남녀 모두 같은 인간으로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과 같은 권리를 갖고 교육이나 노동의 기회도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상은 활동 방침에도 반영됐다.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는 관료적 조직을 만드는 운동에 대한 남성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등 성별에 상관없이 페미니즘 사상을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8]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주된 공헌은 법 제도와 정치 등 현대 사회제도가 얼마나 여성을 차별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다.[9] 미국 등 서구권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많은 장벽을 허물고 임금 수준을 균등화했다. 또 여성의 낙태와 기타 생식권 선택을 합법화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일반적 신념과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차별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가사와 육아 문제나 가족 내/부부간의 역학관계, 성적, 여성성은 사영 역의 문제로 충분히 분석되지 않았다.

개인이라는 단위와 사회 입장의 개혁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비판하고 안티 테제로 등장한 것은 사적 영역과 여성과 남성의 성별 차이, 가부장제를 여성 억압 원인의 중심 개념으로 삼은 래디컬(급진적) 페미니즘이었다. 래디컬 페미니즘(Radical feminism)은 여성 억압의 원인을 여성의 신체와 성의 남성 지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고, 래디컬 페미니즘은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종속성에 초점을 맞췄다.

래디컬 페미니즘이 제기한 중요한 주제는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The Personal is Political)"이었고, 이는 1970년대 미국 전역에 퍼진 운동의 슬로건이 되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공적 영역에서 여성차별에 대한 반대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전개한 반면, 래디컬 페미니즘은 이러한 공과 사에 따라 구별되는 이원론을 비판하고 여성의 출산, 육아, 가사노동,

---

[8] Lorber, J. (1997). The Variety of Feminisms and Their Contributions to Gender Equality. Bibliotheks- und Informationssystem der Univ. Oldenburg. pp.9

[9] Lorber, J. (1997). The Variety of Feminisms and Their Contributions to Gender Equality. Bibliotheks- und Informationssystem der Univ. Oldenburg. pp.10

연애, 결혼 등과 같은 일상적, 개인적인 사항도 사회적, 정치적인 사항이며 거기에도 남성의 힘에 의한 지배는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0] 즉, 여성과 남성이 접촉하는 장면은 어디에서나 공적 측면과 동시에 사적 측면을 갖고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로서 언급되지 않았던 사적 분야에서 야말로 남녀 간의 역학관계의 불균형, 지배 복종 관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여성들의 일상적인 종속성과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래디컬 페미니즘 이론에서 남성에 대한 시각은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 중심주의의 문제점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급진적인(Radical) 사상이다. 원래 래디컬 페미니즘 자체가 자유주의 페미니즘 같은 동등성의 강조와 남녀의 공존보다는 남성에게서 여성에 대한 성적 지배 같은 문제에 대한 추구라는 일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남성을 억압하는 주체적 존재로 간주하고 여성과 남성의 이해관계는 경합 혹은 적대적인 존재라고 본다.[11] 즉 래디컬 페미니즘은 남녀의 성별 분리성을 전제로 하여 남성을 피해를 주는 가해자로 간주하고 여성이라는 집단의 존재 의의를 강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여성 중심의 관점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의 남녀 차별의 중립성에 대한 필요한 수정이기도 하다.

라디칼 페미니즘의 이론적 공헌은 가정 등 사적 측면에서의 여성 억압에 "가부장제(Patriarchy)"라는 표현을 재정의하여 남성들에 의한 여성 내면화와 억압의 가시화하였다. 가부장제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체계적 지배로 정의됐다. 즉, 가족 내에서 남편이나 아버지가 남녀를 포함한 그 구성원 위의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라는 지금까지의 가부장제의 의미를 확대적으로 해석하여 어느 시대에나 어느 사회에나 있었던 여성 억압을 설명하기 위한 보편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12] 이 가부장제라는 용어는 래디컬 페미니즘뿐만

---

[10] Lorber, J. (1997). The Variety of Feminisms and Their Contributions to Gender Equality. Bibliotheks- und Informationssystem der Univ. Oldenburg. pp.16

[11] Lorber, J. (1997). The Variety of Feminisms and Their Contributions to Gender Equality. Bibliotheks- und Informationssystem der Univ. Oldenburg. pp.17

[12] Kawashima, Y. (2000). Feminist Thought : From Modern to Postmodern(フェミニズム理論の現在:アメリカでの展開を中心

아니라 페미니즘 운동 안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고, 이러한 가부장제의 기원에 대한 추구, 태도와 구조 분석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페미니즘 이론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 그 규명이 여성해방의 길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라디칼 페미니즘 사상의 한계점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래디컬 페미니즘 남성에 대한 비판성은 남녀가 적대하는 사회를 도래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남녀 단절을 초래하고 페미니즘의 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래디컬 페미니즘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분열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 래디컬 페미니즘 사상은 여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물론 모든 여성들이 항상 비슷한 경험을 하거나 통일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여성의 특유성을 평가하고 남성의 성적 가해성과 공격성을 비난하는 것은 남자와의 완전한 분리를 원치 않는 여성들이나 레즈비언 등 당시의 정형적인 "여성"으로서의 성적 지향에 속하지 않는 여성들을 제외해, 그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13]

제 2 절 가족 역학관계의 유형 검토

이태영은 가족법 개정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까지 운동 과정을 통해 '가정'을 주제로 남녀평등사상의 발전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이 시기 이태영은 지금까지의 법적인 남녀평등 실현과 더불어 민주화·국제화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수단으로 남녀평등과 평화적 사회 실현을 위한 '가정의 민주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가정 내 관계성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몽하였다. 그리고 이 이태영의 '가정' 사상은 가정, 특히 부부 내 권력·세력 관계 개선으로 요약된다. 여기서는 1980년대

に), Journal of gender studies, Ochanomizu University, Vol.3, pp.52

[13] Lorber, J. (1997). The Variety of Feminisms and Their Contributions to Gender Equality. Bibliotheks- und Informationssystem der Univ. Oldenburg. pp.18-19, 23-24

가족법 개정운동 과정에서 이태영이 중점적으로 주장한 가정 내 권력관계의 형태를 검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족·부부관계에 대한 Herbst(1952)[14]의 이론을 살펴본다.

"권력"이라는 개념은 원래 정치학이나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것으로, 많은 연구가 Weber의 권력 정의인 “자신의 의지를 타인의 행동에 강요할 가능성” 을 근거로 하고 있다.[15] French와 Raven의 사회 권력 이론(Social Power Theory)은 권력을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능력" 이라고 정의했다.[16] 여기서는 사회구조에서 사람들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상대의 상황을 좌우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경제적인 요소에 주목하는 자원 이론이나 합법성이나 숭배 등의 요인이 협상을 좌우하는 것에 주목한 교환이론, 또 최근에는 전문성이나 정보량 등의 요소 자체가 현상의 과정에서 권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축적된다는 점도 논의되고 있다.[17]

한편 인간관계에서의 권력구조, 특히 가족, 부부관계에 잠재된 권력 형태는 종종 파악되기 어려우며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권력의 측정 방법과 규정 요인을 과제로 전개해 왔다. 그 선구이다 Herbst(1952)는 "가족의 관계성의 측정(The Measurement of Family Relationships)"이라는 주제로 호주의 자녀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서, 가족 관계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의 명확한 권력 모형을 설정하는 것을 시도했다. 우선 그는 가족 및 부부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가운데 두 사람 사이의 행동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파악할

---

[14] Herbst, P. G. (1952). The Measurement of Family Relationships. Human Relations, 5(1), pp. 3–35.

[15] Weber, M.& A. Hamashima (2012). Typen der Herrschaft(権力と支配), Kodansha. pp.155

[16] French, J. R. P., Jr., & Raven, B. (1959). The bases of social power. In D. Cartwright (Ed.), Studies in social power (p. 150–167). University of Michigan. pp.251

[17] Sun, S. (2017). The Power Relationships between Husbands and Wives：Research Review Focuses on the Process of Power(夫妻の権力関係：権力の過程に焦点を当てて), Bulletin of Faculty of Education(129), Hokkaido University, pp. 3

필요가 있는 요소를 중점화했다.

Herbst는 부부간의 행동관계를 하나의 그룹활동으로 가정하고, 그 세력구도의 판단요소로서 이하 변수를 파악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i) 누가 다양한 그룹 활동을 실행하는지
(ii)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누가 권력의 근원인지
(ii) 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의견 차이가 있는지[18]

처음 2가지 변수는 그룹의 구조 혹은 "사회적 환경, 분위기(Social Climate)"이라고도 불리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다. 세 번째 변수는 그룹 내에서 명백한 긴장의 양을 결정하며 이 역시 구조 기능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룹 내의 긴장의 정도는 유동적이며, 모형화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Herbst는(i)와(ii)의 변수에 주목한 분석 콘셉트를 설정했다.

Herbst는 가사노동, 자녀의 육아, 사회활동, 경제활동의 4개 가정 활동에 주목하는 형태로 그 실행자와 결정 권력 보유자의 상황을 규정했다. 우선 앞서 말한 (i)와 같은 활동 영역에 관한 분류에 대해 정리했다. 이는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종사하는 활동과 각각이 개인별로 종사하는 활동을 정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가족의 분야에서 각 활동 영역의 실행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Ha= 남편 혼자서 하는 활동
Wa= 아내 혼자서 하는 활동
Ba= 부부 둘이서 하는 활동[19]

그리고 (ii)와 같은 결정(Decision)에 관한 권력 보유자의 모델화, 즉

---

[18] Herbst, P. G. (1952). The Measurement of Family Relationships. Human Relations, 5(1), pp.4.
[19] Herbst, P. G. (1952). The Measurement of Family Relationships. Human Relations, 5(1), pp.8

실행 결정에서의 역학관계 우위성 파악은 한쪽 실행에 대한 의식이 다른 쪽에 의한 권력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규정한다.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실행자의 분류와 같이 3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Hd=남편이 결정
Wd=아내가 결정
Bd=부부 둘이서 결정[20]

즉 Herbst가 정리한, Ha, Wa, Ba의 3개의 실행자(Activity) 변수와 Hd, Wd, Bd의 3개의 결정자(Decision) 변수를 조합함으로써 그 부부 사이의 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실행자와 결정자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Herbst는 실행자와 결정자의 조합을 통해 분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부의 권력관계 패턴을 정의했다. 남편 우위형, 부인 우위형, 자율형, 공동 공유형 네 가지다.[21]

첫째, 남편 우위형(The Husband Dominance Pattern)은 "남편의 리더십"과 "남편의 독재성"이 권력의 영역에서 우위를 점하는 유형이다. 변수 조합으로는 Ba+Hd(실행은 부부 공동, 결정자는 남편), Wa+Hd(실행자는 아내, 결정자는 남편)가 남편 우위형에 적용된다. 즉, 가정 내 행동 관계에서 남편의 지시와 권력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내가 실행자가 되는 경우도 남편의 의사를 따르는 형태이다. 따라서 이 가족구조의 유형은 남편 우위형이라고 불린다.

둘째, 부인 우위형(The Wife Dominance Pattern)은 Ba+Wd(실행은 부부 공동, 결정자는 아내), 또는 HaWd(남편이 실행자, 아내가 결정자)라는 유형으로 정의되며 남편 우위형과는 반대로 가정의 행동 관계에서 아내의

---

[20] Herbst, P. G. (1952). The Measurement of Family Relationships. Human Relations, 5(1), pp.8
[21] 권력관계 모형의 한국어역은 조은경(1987). 『家族의 커뮤니케이션과 權力에 關한 機能的 理論의 接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pp.136 를 참조

권력 영역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 모형이다. 즉, 이러한 유형대로 아내의 결정에 있어서 권력의 크기와 영향력이 큰 경우, 아내가 우위를 점하는 부부 권력관계가 정의된다.

셋째, 자율형(The Autonomic Pattern)은 부부가 권력을 분리하고 Ha+Hd(실행자·결정자가 남편) 유형과 WaWd(실행자·결정자가 아내) 유형이 공존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즉,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른 생활영역에서 비교적 동등한 권리를 갖고 독단적으로 독자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권력 모형이 적용된다. 생활 영역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역할 기대와 밀접하게 합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공유형(The Syncratic Pattern)은 Ba+Bd (실행자·결정자는 부부 공동)와 같은 주로 동기적인 협력을 하는 패턴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동기적인 기능 분담을 하는 부부에게 적용되는 권력 모형이다. 즉, 이런 유형의 부부는 공유된 권위에 따라 가정 내 사항에 관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부부가 서로 모든 중요한 영역에서 충분한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분석에서는 이 네 가지 부부간의 권력모형을 기반으로 이태영이 1980년대 남녀평등사상의 발전형으로 강조한 가족사상, 가족의 관계성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본다.

제 3 장 이태영의 남녀편등/가족의식 형성 배경

제 1 절 서구식 기독교 교육 및 가정환경의 영향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그리고 민주화 및 가족법 개정운동과 같은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운동의 선진적이고 주도적인 운동가로 활약한 이태영 그녀의 남녀평등 의식과 가족관을 분석하기 위해 그의 선구적 의식의 형성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성장과정과 교육, 경력 과정을 살펴본다. 우선 가족·가정과 기독교 및 서구식 교육 경험에서 받은 영향이 그녀의 의식 특성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태영의 젠더 및 가족의식의 특징은 초기 단계부터 남녀평등 의식과 여성이 경력 형성과 가정 운영을 병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초기 단계부터 구축된 이태영의 남녀평등 의식 기반에는 가족, 특히 어머니의 형평성 있는 교육과 기독교적 서구식 교육이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더 말하자면 이 이태영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방침이나 직업 및 경력의식은 딸인 이태영의 청년기 이후 경력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이태영은 1914 년 평안북도 운산군 북진읍에서 이헌국과 김흥원의 2 남 1 녀 중 딸로 태어났다. 이태영이 태어난 이 지역은 압록강을 오가는 독립운동가들의 통로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다. 또, 금광산업에 의해서 번영해, 미국인등의 외국인이 많이 거주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서구문화가 한국내의 다른 지역보다 조기에 보급된 개화적인 지역이었다[22]. 이 평안북도 운산군은 기독교 미감리회 선교회에 의해 일찍부터 기독교가 전파된 지역이기도 했다. 이태영의 할아버지도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초대 신자 세대이다[23]. 이러한 배경으로 이태영 자신도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부모를 두었으며,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

[22] 이태영(1977).『오직 한 뜻으로』, 물결, pp.21-22

[23] 이유나 (2017). 『해방후 이태영의 여성인권론과 인권, 민주화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46), pp.100,

실제로 이태영은 어려서부터 교회의 주일학교에 열심히 참여하며[24],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성경과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서구적 사회 개념을 배우고 기도하는 습관과 봉사의식을 형성했다.

그리고 이태영은 결혼 후 입학한 서울대학교 법학대를 제외하고 영변의 숭덕학교, 평양의 정의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 등 주로 기독교계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진학해 당시로서는 선진적인 서구식 고등교육을 수료했다. 이태영은 이처럼 매우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 방침에 따라 학교를 다니면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남녀는 사회적으로 평등하다"[25]는 근대적 남녀평등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태영은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나 종교교육과 학교교육 과정에서 배운 기독교 개념을 통해 남녀평등의식과 봉사정신을 양성하였는데, 특히 그녀의 남녀평등의식과 가족관 형성에 큰 역할을 한 것은 그녀의 어머니 김흥원이었다. 이태영의 아버지 이헌국은 지역 기간산업인 금광산업에 종사하다가, 이태영이 1 살 때 탄광에서의 사고로 사망했다. 부친이 사망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건에서 이태영의 어머니 김흥원은 남녀의 직업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해 가계를 지탱하고 세 자녀를 키웠다. 그 어머니의 의식은 이태영 자신이 인터뷰나 에세이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몸뚱이는 개도 먹지 않으니 몸 아낄 것 없이 일해야 한다"[26]는 어머니의 말씀을 몇번 회상할 정도로 딸의 경력 형성에 대한 의사에 반영 되었다.

실제로 이 어머니의 근면성이나 노동 같은 사회적 활동에 대해 성별을 불문하고 유연하게 임해 온 자세는 이태영 자신의 여성 직업이나 경력에 대한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태영의 여성 경력에 관한 사상을 이해하는 데 그녀의 학생 시절의 사건이 중요하다.

---

[24] 이태영(1999).『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pp.210-213
[25] 이유나 (2017). 『해방후 이태영의 여성인권론과 인권, 민주화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46), pp.100-101
[26] 이태영(1991).『나의 만남, 나의 인생』, 정우사, pp.15-17

이태영은 이화여전 재학 시절 스승인 방신영, 김활란과 각별한 사제 관계를 맺었으나 한편으로는 여성관, 직업관 사상 측면에서 반대 입장을 취했다. 방신영은 여성의 사회적 책임은 현명한 주부로서 제 2 세 국민인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들의 주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기보다 가정에서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 견해에 대해 이태영은 여성이 가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방신영의 인식과는 달리 여성은 가정에서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직업을 갖고 사회적 측면에서의 역할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7].

같은 관점에서 김활란의 여성 및 직업관과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태영이 이화여전 재학 시, 김활란은 '여성과 직업'이라는 강의에서 여성은 가정과 직업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양자택일"적인 논리를 펼쳤고, 이 논리를 바탕으로 김활란 자신도 결혼과 가정생활을 포기하고 교육 등 사회활동에 집중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담론에 대해 이태영은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을 양립해 성공을 거둔 프랑스의 물리학자, 화학자 인 마리 퀴리 여사를 예시하면서 여성의 가정과 직업 양립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주장해 김활란의 의견과 충돌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28] 이러한 이태영의 사회 진출에 대한 적극성과 긍정적 견해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실제로 직업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고 근면하게 대처했다는 체험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게다가 이태영의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임에도 아들과 딸의 구별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원한다고 할 정도로 남녀평등의식을 가진 개화적인 인물이었다. 이태영 자신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태도에 관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일찍이 기독교의 세례를 받아 비교적 개방적인 사고와

---

[27] 이태영(1991).『나의 만남, 나의 인생』, 정우사, pp.46
[28] 이태영(1991).『나의 만남, 나의 인생』, 정우사, pp.50-51

생활습성 을 가지셨던 나의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우리 2 남 1 녀 를 차별 없이, 구김살 없이 키우려고 애쓰셨다. 어머니는 나와 작은 오라버니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 둘을 다 공부시키지는 못한다. 두 사람 중에 열심히 공부하는 한 사람만 끝까지 공부시키겠다" 고 하셨다."[29]

이태영의 어머니 김흥원은 이러한 말대로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고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학습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공평성 있는 의식을 실천하였다. 실제로 딸 이태영과 두 아들에게 평등하게 고등교육 기회를 주었으며, 대학에도 진학시켰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오빠들도 역시 개화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태영이 어려서부터 변호사의 꿈을 갖기를 지지하고 응원했다.[30] 이런 어머니의 직업 및 경력에 대한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태도,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남녀의 차별 없이 교육 기회를 주는 데 긍정적인 자세는 어릴 때부터 이태영이 뚜렷한 목표 의식과 근면성, 남녀평등성을 일상을 통해서 내면화하는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남녀평등을 실천하는 의식을 가진 가정환경에서 자란 이태영은 1910 년대~1920 년대 아직 국내에서 매우 여성의 지위가 낮았고, 여성들 자신도 여성차별적 대우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한 시기에 소녀시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남녀가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졌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과정을 통해 어려서부터 여성들의 생활이나 사회적 대우에 관한 문제에 예민해졌고, 남녀 불평등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태영 자신은 청소년기에 여성문제, 남녀평등 문제에 대한 의식과 관심을 갖게 된 경험으로 3 가지 사건을 소개하기도 했다.

첫째, 이태영은 그녀가 여섯 살 때 큰 오빠와 결혼해, 시집온 올케가 매일 자신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을 위해 집안일을 하는 일상을 통해

---

[29] 이태영(1999).『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pp.166
[30] 이태영(1991).『나의 만남, 나의 인생』, 정우사, pp.21-22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다른 집에서 시집와, 친딸이 아닌데도 손님 대접을 받지 못하고, 매일 바쁘게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올케의 가족 내 처지에 대해 의문과 불만을 가졌다고 한다.[31] 즉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올케의 일상적인 생활상을 통해 여성의 입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태영이 초등 5 학년 때, 남녀평등 의식을 갖고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교육 기회를 마련하던 어머니가 "공부해야 할 아들 녀석은 초저녁부터 잠들고, 안 해도 좋을 딸아이는 밤새 공부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고 낙심한 체험이다.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혼자만 끝까지 공부하게 하겠다"라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 이태영은 둘째 형과 경쟁하듯 석유등을 켜고 밤늦게까지 공부했는데, 아침이 되어 남은 등유의 양으로 누가 더 공부했는지 지켜보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32]. 딸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이 시기 시민들이 당연한 것처럼 했던 것인데, 선진적 평등 정신 아래 딸과 아들의 구별 없이 양육하던 어머니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이태영에게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경험은 그해 고등학교에서의 스피치 대회에서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가르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사회에서의 여성 대우 문제에 저항하는 계기가 됐다.[33]

셋째, 이화여전 재학 시절인 1935 년 11 월 조선 중앙일보 주최 전국여자전문 학생웅변대회에서 '제 2 세의 인형'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여 1 위를 수상한 경험이다. 헨리크 입센의 소설 “인형의 집”의 여주인공 노라가 가정에 구속된 "1 세 인형"으로 집을 뛰쳐나간 것을 예시하면서, "2 세 인형"인 한국 여성들은 인형이기를 거부하면서도 노라처럼 가정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인형의 집"을 "인간의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34] 이처럼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지배되고 피해를 당하는 당시

---

[31] 이태영(1999).『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pp.165-166
[32] 이태영(1999).『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pp.166
[33] 이태영(1999).『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pp.167
[34] 이태영(1999).『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pp.168

여성들을 대변하면서 가정생활 상황의 개선과 전환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남녀평등과 여성 인권 존중이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이태영이 어려서부터 받아온 종교적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은 그녀의 젠더관과 여성의 경력 의식, 특히 가족법 개정운동 등 여성운동의 기반인 남녀평등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태영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의식,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교육을 장려하는 등 남녀평등한 교육사상은 이태영에게 남녀평등 정신을 내면화시켰으며 올케와 같은 여성의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예민함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여성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학창 시절 연설 발표에서의 주장 등을 통해 가부장제적 구조 속에서 남녀 차별을 보장하는 사회에 대한 저항과 이를 개선하려는 동기가 되었다. 이 자세가 훗날 가족법 개정 운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동기 요인이 됐다는 의미에서도 이태영의 청소년기 성장과정 및 가정환경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법학 및 법조인 직무와 남녀평등/가족의식의 실천

이태영은 청소년기의 성장과정, 가정환경, 여성문제와 관련된 체험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적극성과 남녀평등사상을 내면화하고, 나아가 그 사상을 구현하며, 연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개하는 자세를 길렀다. 그리고 이태영이 결혼 이후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법학, 법조계에서 활발하게 진행한 활동 과정은 그녀의 여성문제와 가족관에 대한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과정에서 그녀는 가부장적 지배적 사회에서 법학자로서,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자신의 남녀평등성이나 가족관과 같은 사상을 실천하고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태영의 사상 형성 및 강화 과정을 법학자 및 법조인으로서의 측면과 가정생활의 측면 양쪽에서

살펴본다.

이태영과 법학의 만남은 1933년 3월 이화여전에 입학한 시기이다. 그녀는 가사과 학생으로 입학해 여성이 가사노동이라는 질곡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의식 아래 합리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생활의 과학화"를 실천하는 등 전공과목을 적극적으로 배웠다.[35] 동시에, 어릴 때부터 변호사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에 관한 공부에도 열심히 임했다. 이화여전 본과 1학년 때 만난 스승인 법학자 정광현 교수는 이러한 이태영의 법학 학습에 대한 열정을 도운 중요한 인물이다. 이태영은 정광현 교수가 담당하는 '법률경제' 과목을 들으며 교수와 만났고, 다른 법률 관련 과목에 대해서도 열심히 배웠다. 정광현 교수는 법학에 관심이 많은 이태영을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개인적으로 지도했으며 학내에 법률경제 연구회를 조직했을 때도 꼼꼼하게 지도했다. 이태영은 이 교수의 지도에 보답하기 위해 가사에 관한 책과 법학서를 들고 교내를 뛰어다니며 학업에 몰두했다고 한다.[36]

이태영은 이화여전 졸업 후 1936년 정일형 박사와 결혼했다. 이 시기부터 1945년 해방까지 열렬한 운동가였던 남편이 탄압에 의해 당국에 구속되자[37], 가족의 생활을 돕기 위해 이태영은 학업을 잠시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태영은 변호사의 꿈을 유지했고 1945년 8.15해방을 계기로 드디어 법조인이 될 기회를 얻었다. 스승 정광현 교수의 격려와 남편 정일형의 지지로 1946년 서울대학교에 남녀공학 제도가

---

[35] 이태영은 가사과에서 영양학을 가르치던 김호직 박사가 '장독대에 혁명이 와야 한다'고 가르친, 보다 쉽게 개선된 메주의 제조법을 실제로 시험하는 등 합리성과 과학적 관점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 연구했다. 이태영(1999).『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pp.167-168

[36] 이태영(1977).『오직 한 뜻으로』, 물결, pp.42-43

[37] 정일현은 미국에서 신학과 사회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우수한 인재였으나 14세였던 31운동 당시부터 15차례나 경찰에 적발돼 지속적으로 일본 당국의 감시를 받았던 항일운동가였다. 그는 1930년대 후반 평양 공장지대에 교회를 세우고 노동자들을 모집했으며 서울 감리교 신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쳤다가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탄압받기 시작했다. 하희정(2012). 시대를 위한 저항과 변론.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99), pp.20

도입됨과 동시에 이태영은 서울대 법대 최초의 여학생으로 입학했다.[38]

그리고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노력 끝에 이태영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국내 최초의 여성 법조인이 되었다. 이때 이태영은 국내 최초의 여성 판사 취임을 목표로 했으나 "여성이 판사가 되는 것은 시기 상조"라는 표면적인 이유와 야당 의원의 부인이라는 정치적 입장의 이유로 이승만 정부가 판사 임용을 거부하면서 판사 취임은 무산됐다.[39]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했지만 처음 탄생한 여성 법조인을 이처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판사 임명을 거부할 정도로 법과 현실 상황은 괴리돼 있었다. 이는 이태영으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대우 차별을 인식하게 한 중요한 체험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부당한 이유로 판사직에 취임하지 못한 이태영이었지만 대신 민간 변호사가 되어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태영은 자택에서 변호 법인 사무실을 열고, 주로 가족 문제를 중심으로 한 법적 분쟁으로 고통받는 여성을 다루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태영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여성들이 오히려 가족법과 같은 남녀 불평등 조항이 있는 법 제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법 제도상의 남녀평등 실현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태영은 여성 단체와 정광현 교수 등 법조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족법 개정과 이에 부수되는 남녀 불평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또한 이태영은 운동 추진과 함께 1956년 여성차별과 가정 분쟁 등으로 고통받는 취약한 여성들을 위한 법적 지원 기관으로 여성법률상담소를 설립했다. 1966년에 '가정법률상담소'로 개명한 이 기관은 사회적으로 부당한 입장에 놓인 여성들의 보호뿐 아니라 가족법의 동성동본 금혼 제도와 같은 규정에 관해 상담을 하러 오는 남성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가족법 개정운동의 추진과 법 아래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

[38] 하희정(2012). 『시대를 위한 저항과 변론』.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99), pp.21

[39] 하희정(2012). 『시대를 위한 저항과 변론』.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99), pp.21-22

담당한 기관이었다.

이태영은 법조인으로서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법학자로서의 활동과 교육 활동에도 힘을 쏟았다. 법조인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1957년부터 1958년까지 미국에서 사법/법학 연수를 하는 등 법학 관련 공부를 계속했다.[40] 1969년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담소에 접수된 이혼상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이혼제도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논문을 작성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법학자로서 국내의 이혼제도 분석에 기여하였다. 이태영은 또 이화여대 법정 학과장으로 국내 여성 법조인 후계 육성에도 주력했다. 나아가 "조용한 혁명"[41] 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가족법 개정운동이 시작된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40여 년간 가정 법률상담소를 중심으로 전개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통해 국내에서의 남녀 불평등 상황 유지에 따른 문제점을 강조하고, 근대적 남녀평등의 이념이나 가족상, 여성인권 보호, 여성 사회진출의 중요성 등을 시민에게도 적극적으로 계몽하였다.[42]

이태영은 결혼 후 고초를 겪으면서도 법학 연구,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력 형성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사회적 지위를 확립했다. 그녀의 이러한 여성 자립과 사회에서의 남녀평등사상의 실천은 법학과 같은 전문적 분야를 전공하거나 사회에 진출하여 활약하는 사례가 드물었던 이 시기의 여성들에게 대표적인 롤 모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률상담소 설립과 가족법 개정운동 추진, 교육 활동을 통해 법 아래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중심 역할을 함에 있어서 성장과정 속에서 양성된 봉사정신과 사회 계몽정신이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태영은 법조 및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직무를 맡아 자율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형성하였다. 또한 그는 사회활동 추진과 동시에 가정적 측면에서도 남편 정일형과 협조하면서 건전한 가족관계·가정생활과의

---

[40] 이태영(1992),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pp.135
[41] 이태영(1999).『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pp.169-172
[42] 대한YWCA연합회(1976), 『한국 YWCA반백년』, 대한YWCA 출판위원회, pp.135., 한국YWCA연합회(2006) 『한국YWCA 80년사』, 대한YWCA 80년사 편찬위원회, pp.78.

양립을 실천했다. 미국 유학과 해방 후 UN 총회 한국 대표단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2대 국회부터 9대 국회까지 8차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남편 정일형은 이태영과 마찬가지로 남녀평등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태영의 서울대 법학과 입학을 그의 스승인 정광현 교수와 함께 후원하고 변호사 업무, 사회운동 추진자로서의 활동을 지지하면서 아내가 가정생활과 직업을 양립할 수 있는 기초가 된 공동적인 가족관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관계성은 남편에게 종속된 아내의 모습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보편적 부부 및 가족관계와 비교할 때 매우 선진적인 모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태영도 역시 직접 남편의 선거운동과 그가 추진했던 민주화 운동에 대해 협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태영은 정치인과 법조인 인맥을 구축하면서 남편의 정치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해왔다. 또 남편이 지지하던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김대중 등 민주주의 추진파의 변호를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43] 야당 의원의 아내로서의 입장은 판사 취임 인준의 굴절처럼 가족법 개정 운동 등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남편과의 협력적 관계 실천과 민주주의 사회 실현 자체가 남녀평등과 가족법 개정 실현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남편의 정치활동을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부모의 협조적 관계와 자립성을 보고 자란 1남 3여, 4명의 자녀들은 부모의 소신과 영향을 받아 각각 법학, 미술 등 학업에 열심히 임하고 건전하게 성장했다. 이태영은 자녀들에게 다른 어머니처럼 항상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함을 느꼈다고 하며, "자신의 생에 대한 높은 신념과 몰두로 자녀교육에 구체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으며, 비교적 방임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데 지나지 못했다."[44] 라고 가족에 관한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이태영은 가족이 서로 바쁜 생활

---

[43] 이유나 (2017). 해방후 이태영의 여성인권론과 인권, 민주화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46), pp.127

[44] 새가정 편집부 (1968). 『건전한 성장은 운명공동체인 가정의 대화에서』. 새가정, pp.118

속에서도 자녀들과 대화를 중요시하고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평등한 공동체로서 가족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다.[45] 실제로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저녁 식사 시간에, 정치나 사회 문제 등의 논의를 하고 있던 모습을 예시하면서, 이태영 자신도 화제를 불러, 보다 높은 각도에서 다양한 생활 감정에 이르기까지의 대화로 이끄는 등, 부모와 자식의 대등한 대화를 통해서 관계성을 쌓아 온 모습을 보였다.[46]

또한 이태영의 가정에서의 특징적인 점은 자신의 일로 바쁜 와중에 다른 사람들과 연계하여 가정을 운영했다는 점이다. 특히 자녀에 대한 교육 측면에서 이태영은 이화여고 교장을 지내며 교육인으로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에 기여한 신봉조 등의 도움을 받아 자신과 남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자세를 보였다.[47] 오늘날에는 자녀가 학원을 다니거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가족생활에 타인이 개입할 기회가 매우 많아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다. 한편으로 교육이나 가사 등의 가족 이슈를 가족 내에서만 귀결시켜, 가정의 부담이 컸던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태영이 근대적이고 포괄적인 가정 운영 방침을 취했던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와 같이 결혼 후에도 이태영은 자신의 직업 활동·사업을 통한 자신의 사회적 지위 확립과 사회 공헌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남편을 비롯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협력을 얻어, 가정생활 운영을 건전한 형태로 양립했다. 또한 가족 관계성 구축을 통해 부부 및 부모/자녀 간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결혼 후 이태영의 법조·사회활동과 가정생활 과정은 가부장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스스로 직업과 가정 양쪽 측면에서 남녀평등사상의 실현이나 종속성에서 벗어난 가족관, 여성의 경력 형성 가능성과 같은 사상을 스스로 실천, 강화하고 계몽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태영이 실현한 여성의

---

[45] 새가정 편집부 (1968). 『건전한 성장은 운명공동체인 가정의 대화에서』. 새가정, pp.133

[46] 새가정 편집부 (1968). 『건전한 성장은 운명공동체인 가정의 대화에서』. 새가정, pp.119

[47] 이태영(1991).『나의 만남, 나의 인생』, 정우사, pp.172-173

사회진출과 가정 양립 사례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나 가족상의 롤 모델로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제 4 장 1950년-1970년대 운동과정과 이태영의 젠더 사상 분석

제 1 절 한국 가족법개정운동과 젠더 사상

여성운동이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불평등을 철폐하기 위해 성 평등을 실현하려는 자각적이고 사회적인 운동을 의미하다[48]. 봉건적 공동체의 붕괴와 산업화로 인한 가족 및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변질으로 인해 가족이라는 개념에 완전히 내포되어 온 여성의 삶은 불안정해졌고, 한편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근대적 인간해방 사상도 역시 여성들에게 차별과 의존의 지속을 인식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사상적 변동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모색하고 사회적 변혁을 요구하게 된다. 그 요구를 조직적인 운동을 통해서 실현하려 한 것이 바로 여성운동이다.

한국의 경우 가족법 개정운동과 여성운동의 상호성을 검토하면, 1950년대 민법 제정 전후부터 2000년대 까지 장기간 동안 진행된 가족법 개정운동은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여성노동운동과 함께 해방 후 한국 여성운동의 중심축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운동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운동 과정을 통해, 법 제도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해 진행하는 정부, 국회에 대한 건의서나 법안 수정안 제출,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와 같은 사회정치적 활동이 한국 여성운동의 중요한 전략이자 수단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한국의 상황을 볼 때 해방 후 자율적인 민주적 법치국가로서의 근대적이고 평등한 법 제도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족법이 다른 개별법과 달리 기존의

---

[48] Heibonsha World Encyclopedia(世界大百科事典) (2009). Women's Movement(女性運動). In Heibonsha World Encyclopedia (2). Retrieved March 12, 2021, https://kotobank.jp/word/%E5%A5%B3%E6%80%A7%E9%81%8B%E5%8B%95-1175556

가부장제 지배형 사회 속에서 정착되어 온 전통적 인습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는 배경이 있다. 결과적으로 가족법이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억압과 불평등을 유지 촉진시키는 주요한 장치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가족법 개정을 지향하는 여성들의 의식은 해방 후 한국에서 여성 운동의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한편, 한국여성개발원(1991)은 여성운동이 가족법 개정운동과 연계된 것에 대해 가족법이 쟁점화되면서 사회운동과 여성운동으로서의 위상에 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가족법이 여타 법 제도와 달리 역사적 전통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는 배경으로 문제가 복잡해지고 가족법 법규의 수정과 함께 시민에게 깊이 파고든 전통적 관념에 기인하는 성별 불평등을 배제하기 위한 사회 계몽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전개되었던 노동법 개정운동이 노동제도 개선이라는 단일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경제적 변화와 노동자의 적극적인 세력화가 일어나 급진적으로 운동이 진행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족법 개정운동은 공적 및 사적 측면에서의 남녀평등을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운동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측면이 있는 가족법개정운동이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그 전개 과정은 여성운동가와 여성단체, 전문가의 증가와 연대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중이 가족법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유권자 의식을 자각하고 운동에 참여했던 역사적으로 중요한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문제에 대해 자각적으로 대항해 나갈 필요성을 여성 대중에게 인식시킨 것은 현대까지 이어지는 젠더 관련 운동의 벤치마킹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족법 개정 운동 과정 자체가 한국에서 페미니즘 사상의 발달과 확대의 기반이 되어 온 사실은 명백하다.운동 중 여성단체나 운동가들은 가족법 개정이라는 일정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목표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에게 여성 인권에 대한 의식과

자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소책자 배포와 좌담회, 잡지 발행 등의 홍보활동을 시대별로 강력하게 전개했다.더욱이 말하자면 운동의 전개 자체에도 단체나 운동가 각각의 페미니즘 사상·의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렇게 볼 때 한국에서의 가족법 개정 운동과 페미니즘 사상의 발전 및 확산은 복합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4장/5장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각 시대별 가족법 개정운동 과정의 변천과 함께 가족법 개정운동 초기운동 과정부터 중심적 위치에 있었던 주요 운동가인 이태영의 각 시대별 사상 변천을 분석한다.여기서는 그녀의 사상이 어떤 변천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 사상은 각 시대 운동 과정의 흐름과 일치성을 보였는지, 혹은 불일치성을 보였는지를 분석한다.

제 2 절 1950년대-1960년대 불안정한 운동과정과 페미니즘 사상 "도입기"

1945 년 해방 이후 미국의 신탁통치기를 거쳐 1948 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 후 조기에 국가의 상위법으로 헌법을 제정했다. 이어서 이 헌법의 하위법인 개별법제도 제정을 목표로 1949 년 대통령 산하 조직으로 법전편찬위원회가 설치되어 민법 제정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49]. 이 과정을 통해서 정부와법전편찬위원회는 가족법을 전통과 관습에 기초한 내용으로 제정하는 것을 결정했다.

신 민법의 친족상속 편, 이른바 가족법의 입법에 대해서는 의견적 대립에 의한 딜레마의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우선, 민법의 기타 법규와는 달리 가족 간의 법률 규정으로서 기존의 관습이나 전통을 무시할 수 없는 분야로 서구의 근대적 가족법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여 시행하기는

[49] 한국여성개발원 (1991). 『개정가족법과 가족법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p. 218

어렵다는 주장이 전개되었다. 반면 기존의 관습법적 법규 내용을 그대로 제정하게 되면 한국 정부에 의해 제정된 새로운 상위 법인 헌법에 반하는 법제도가 될 뿐만 아니라 근대화하는 사회와 가족관계의 상황과 크게 괴리된 법률이 돼 새롭게 탄생한 것이 민주국가로서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존재했다. 이처럼 가족법의 입법 방침에 대해서는 관습을 존중하고 유지하는 "전통 존중론"과 헌법상의 남녀평등 정신에 입각한 가족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급진적 개혁론"의 대립이 일어났다[50]. 그리하여 정부와 법전편찬위원회는 절충적 입장에서 종래의 전통적 개념을 유지하면서 비합리적이고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봉건적 인습을 피하는 이른바 "점진적 개혁론"의 입장에서 가족법 제정을 하기로 하였다[51]. 그 후,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민법 초안을 작성하고 한국전쟁의 혼란으로 인한 작업의 정체를 거친 후, 1954 년 10 월에 이 가족법 법규를 포함한 민법 입법안이 정부와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입법 과정과 함께 가족법 개정 운동의 태동도 시작됐다. 이 계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태영이었다. 1952 년 실시된 제 2 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사법시험 첫 여성 합격자로 국내 최초의 여성 법조인이 된 이태영은 같은 해 사법연수 중 법전 편찬위원으로부터 새로 제정될 예정인 민법의 가족법 부분에서 호주 제도를 비롯한 관습법적 조항이 계승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들었다[52]. 그리고 그 가족법에서의 남녀 차별적인 규정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 문제를 계기로 이태영은 황신덕 여성문제연구원장과 이화여자전문학교 시절 스승인 법학자 정광현 교수와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53]. 이태영은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YWCA 연합회, 대한부인회, 대한여자청년회, 대한여자국민당, 한국여성문제연구원,

---

[50] 양현아 (2011), 『한국 가족법 읽기: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창비, pp.256.
[51] 안경희 (2014). 『가족법 개정사와 여성운동』. 이화젠더법학, 6(2), pp. 77
[52] 이유나 (2017). 『해방후 이태영의 여성인권론과 인권, 민주화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46), pp.103
[53] 이태영(1991), 『나의 만남, 나의 인생』,정우사, 461-462.

대한조산원회, 여자선교단으로 구성된 '여성단체연합' 결성을 주도했으며, 1953 년 3 월 국회 및 법전 원칙 편찬위원회 위원장에게 7 가지 요구 조항(호주제도, 혼인, 친권, 입양, 호주상속순위, 재산상속, 재산유류분)를 포함한 "민법 중 친족상속편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54]. 제출후에도 이태영의 주도로 가족법 초안 심의에 관한 의견서 제출과 수정안 제출, 강연 및 좌담회 개최 등 활동을 진행했으며[55], 정부와 관계 기관에 대해 헌법상의 남녀평등 규정에 근거한 가족법의 심의와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이태영 및 여성 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법은 관습법과 일제시기 일본 민법의 내용만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부족한 상태에서 새 민법은 1958 년에 제정되었다. 또 이 시기에 이태영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힘 없는 여성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을 느끼고 여성들이 법률 상담 기관으로서 여성법률상담소를 창립하고 여성들의 여러 문제의 법적 해결을 시도했다. 이 여성법률상담소는 1956 년의 창립과 함께 남녀평등과 가정문제 해결을 주요하고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고 무료 법률상담과 함께 그 의식을 실천하였다.

가족법이 제정된 1960 년대 이후에도 가족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법조인 법학자 등 전문가 및 여성 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민법 제정 직후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는 여성 단체를 비롯한 개정 추진파가 제정법에 반영되지 않은 수정 및 제안사항을 포함한 청원서와 수정안 제출 등의 정치적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 시민 활동은 강연회나 좌담회 등이 주요 수단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민법 시행 전후 시기는 정권의 잦은 변동이 있었던 정치적 혼란의 와중이었으며 가족법 개정 운동 세력도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1961 년 5.16 군사쿠데타와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그동안 점진적으로 계속돼 온 가족법 개정운동은 YWCA 등 4 개 단체를 제외한 모든 여성 단체가

---

[54] 이태영(1992),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pp.40

[55]한국여성개발원 (1991). 『개정가족법과 가족법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p. 220

강제 해산되면서 운동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56].

군사정권은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여 기존 체제에 의해 제정된 법의 개정과 폐지를 시작했다. 가족법개정운동 침체기를 거친 운동가 및 여성단체들은 이 정치적 위기와 변화 상황이 오히려 가족법을 개정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이태영과 황신덕 등 운동가들은 가족법 개정 운동의 전개 방침을 재설정하면서 가족법 개정의 기반이 되는 가정법원 설치 요청을 추가해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진정서를 제출하고[57] 가족법 일부 개정과 가정법원 설치의 근거가 되는 가사심판법 제정에 대해서만 회의 승인을 받았다. 가사심판법 제정을 위해 여성계 대표로 이태영이 참석하는 등 운동의 활동범위가 확대됐다[58]. 안경희(2014)는 이 시기에 여성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운동을 전개한 것이 가족법이 실체적인 법 제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가족법 1962 년 개정에서 수정된 내용은 가족은 혼인과 동시에 분가된다는 법정 분가 제도이다. 이는 장남을 제외한 가족은 결혼과 함께 신청 없이 분가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의 농촌 사회적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이행해 나가는 가족 형식을 고려하여 현실의 가족형태와 법 제도상 가족상의 모순을 해소하려는 목적이었다.

이 시기의 운동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양쪽 측면이 있다. 긍정적 측면으로 안경희(2014)는 기존에 사용하던 친족상속법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가족법이라는 용어를 등장시켰고, 또한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나 가족법 제도를 보다 쉽게 해석시키기 위한 계몽활동을 활발히 시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초 여성단체들이 대중들에게 홍보 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던 친족상속법이라는 용어와 그 내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

---

[56] 한국여성개발원 (1991). 『개정가족법과 가족법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p. 221

[57] 한국여성개발원 (1991). 『개정가족법과 가족법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p. 221

[58] 이태영(1992),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pp.134

과제로 대두되었다. 대안을 모색하던 이태영은 1957 년부터 1 년간 미국에서 법률 연수를 하면서 현지에서 "패밀리로(family law)"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귀국 후 법학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가족법"이라는 용어를 채택했다[59]. 운동 초기부터 이러한 선진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민 계몽에 힘쓴 것은 이후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1950~60년대 한국 여성운동의 한계점으로 이유나(2017)는 당시 여성운동의 규모가 매우 작았고, 운동의 목적 자체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성별 불평등 문제와 같은 사회정치적 과제보다는 여성 단체 회원들 간의 친선을 위한 사교활동이나 봉사활동의 비중이 컸으며, 여성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매우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가족법의 성 평등 실현을 추진하는 일부 여성 단체들만이 중심이 되어 가부장제 이념에서 벗어나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가족법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운동을 시행했지만, 가족법 문제 자체는 여성 전체의 문제로 확산시키지 못했다[60]. 그러나 이처럼 적극적이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여성운동을 전개할 분위기가 거의 없었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태영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여성의 사적 사교활동 중심의 운동 차원을 넘어서기 위해 실질적인 여성 인권 향상과 제도적 남녀평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또한 보다 실체적인 운동의 필요성을 운동 지지자들에게 계몽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차세대 가족법 개정운동의 공적 활동전개에 지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시기 이태영의 논리를 통해 당시 그녀의 사상 형태에 대해 알아본다. 이태영은 법조인으로서의 직업경력을 시작한 직후부터 1995년 가정 법률상담소 소장직을 퇴임하고 은퇴할 때까지 가족법 개정과 남녀평등을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이 과정에서 그녀의 사상은 고정적이지

---

[59] 안경희 (2014). 『가족법 개정사와 여성운동』. 이화젠더법학, 6(2), pp.96

[60] 한국여성개발원 (1991). 『개정가족법과 가족법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p. 219

않았고 오히려 유동성을 가진 것이었다. 가족법 개정 운동이 시작된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이태영 사상의 큰 특징은 남녀의 평등성을 인식하고 이를 최종 목표로 하면서도 여성 피해에 대한 주장이나 인권 획득 주장의 비중이 컸던 불안정성을 보인 "도입기 패턴"적 남녀평등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상의 모습을 이태영의 당시 논리로 살펴본다.

우선 이태영은 가족법 개정운동 초기부터 헌법에 명시된 남녀평등 규정을 가족법 개정과 여성 지위 개선의 근거로 들어 '법 앞에서의 만인의 평등'을 주장했다. 즉 자신의 운동에서 최종 목표는 남녀의 제도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한편 그녀의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논리를 보면 여성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중심이며, 여성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강조해,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의 우위성과 지배성을 중심 문제로 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태영은 1958 년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이라는 주제로 법률, 사회학, 종교 윤리의 3 가지 차원의 시각에서 논의한 논설문에 기고했다. 이태영이 법률가 대표자로서 가족법뿐만 아니라 형법의 상황에도 접근하면서 남녀평등에 관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돌이켜 살펴보건대 헌법이 제정된 이후 과연 우리 법률이 가족생활에 있어서 남녀를 평등하게 취급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 우리의 현 형법이 요 얼마 전까지 부부의 정절 의무에 대해서 불평등한 대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의 정조 의무 위반은 형법상에서 범죄로 취급하지 않았지만, 여성 즉 아내의 정조 의무 위반은 간통죄로 돌려, 일방적 처벌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형법에서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위반한 하나의 예입니다.
>
> 이제 나아가서 우리의 사생활을 규율하고 있는 또 하나의 법규로서 민법 특히 가족 법규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 몇 을 들어

말씀드리면, 딸이기 때문에 오빠나 동생에 비해서 호주상속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재산상속도 받을 수 없으며, 딸이기 때문에 일가친척 가운데서 남자를 데려다 양자는 삼을지언정 그 가정을 이어나가지는 못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딸」이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는 「아내」이기 때문에 무능력자로 취급되어 모든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위에 있어서 남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의 행동은 독립적으로 행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그는「아내」이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남동생에 비해서, 남편에 비해서, 아버지에 비해서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우리 법률이 여성을 통제하고 남자 우선주의(優先主義), 남자 우대주의(優待主義), 남자 특대주의(特待主義)로 나아 갔던 것입니다."[61]

이 시기 이태영은 이러한 법 제도상의 여성 지위 불평등과 법 제도를 기반으로 남성이 보유한 사회에서의 우위성을 강조하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새가정'등 잡지나 신문의 단편 기사란에서도 유사적인 논리를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가족법 개정운동은 전통을 고집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나의 또 다른 고발이요, 항거였다.

날이면 날마다 상담소에 와서 우는 여인들-남편의 사랑을 빼 앗 긴 여인, 시부모의 학대와 이간책으로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인, 자신이 낳은 자식을 빼앗긴 여인,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의 폭력을 견더야 하는 여인, 남자에게 속아 재산까지 빼앗기고 버림받은 여인, 사랑해서 동거했으나 동성동본이라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고 우는 여인, 그러자 남편의 사랑도 돌아서

[61] 이태영 (1958).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기독교사상, 2(7), pp.44-45

버렸다고 우는 여인... , 도대체 그들은 왜 우는 것이며 누가 그들을 울게 만드는가.

대부분이 가정문제인 그들의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누구라도 '무슨 법이 이러느냐' 고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법의 보호를 받 아야 할 여성의 권리는 간 데가 없고 오히려 법 때문에 억울한 여인이 되어야 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거나 가해 자임에 틀림없다."[62]

"호주 제도는 종속시켜야 할 존재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호주 제도란 여성의 지위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 전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호주제도는 예로부터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고 하는 남존여비 사상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며,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르짖고 있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깨트리는 온상이 되었던 것입니다."[63]

이태영의 당시 행동 측면에 주목하면, 이 시기 그녀의 사상이 여성을 둘러싼 문제이 집중한 개혁을 중요시했다고 알 수 있다. 가족법 개정 운동 이전부터 여성들의 교양 계몽을 위한 기관인 여성문화연구소를 설립하여 여성들을 위한 강좌를 개최하였으나[64]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1956 년에 여성 법률상담소를 설립하여 여성들의 이혼이나 상속, 친권 문제 등 가족법과 기타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1959 년 간통죄로 고소당한 부흥부 차관 부인을 옹호하고 변호를 맡았다.[65] 이 변호 활동과 법률 상담 활동을 통해 여성들을 둘러싼 문제가 견고하게 잔존하고

---

[62] 이태영(1999).『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pp.173
[63] 이태영 (1957). 『호주제도는 존속시킬 필요가 있읍니까?』. 새가정, 4(10), pp.68
[64] 이유나 (2017). 『해방후 이태영의 여성인권론과 인권, 민주화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46), pp.103
[65] 이태영(1999).『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한국가정상담소, pp.13-28

있음을 실감한 것은 당시 그녀의 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당시 이태영은 주로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주목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태영의 주장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운동 과정에서 여성이 운동의 매우 중요한 주체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즉 그녀는 운동의 중심 액터로서 남녀 공동적인 집단보다, 여성 중심적인 운동 집단을 가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녀는 여성들에 대해 가족법 개정운동 등 여성의 지위 달성에 여성들이 참여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의 높은 실력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계몽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다.

1. 여성의 자각

가정에서, 학원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사회국가의 일원으로서 여성 자신의 입장을 정당하게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향후 진로를 자각해야 한다.

2. 책임의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3. 교육의 향상

아는 것이 힘이다. 배우는 것만이 실력이다. 교육만이 최후의 승리 길임을 재인식해야 한다.[66]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이태영은 여성 운동의 주체로서 여성들에게, 스스로의 입장에 대한 자각과 의무의 수행, 성장을 요구했다. 그녀는 여성들에 대해 여성의 지위 상승을 위해 교양적 측면에서의 성장의

[66] 이태영(1950. 1 .8). 『한국의 여성은 무엇을 지향하나』, 「경향신문」, 이유나(2017). 『해방후 이태영의 여성인권론과 인권, 민주화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46), pp.111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계몽했으며, 또한 여성들의 자각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여성을 운동의 중심으로 삼은 이태영의 사상은 가족법 개정 운동이 시작된 1950년대와 1960년대 사이에 그녀가 주로 한국 YWCA나 여성문제 연구원, 대한 부인회 등의 여성 단체와 여성 의원들에 의한 통합적 전개를 지향한 점과 남성 참여자가 매우 적었던 상황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면서도, 이태영은 운동에 있어서 '법 아래 평등'이라는 자신의 목표와 일치하듯, 가족법의 문제점이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이라는 논설에서 이태영은 "가족생활에서 여성들이 무시당하는 것은 어머니, 아내, 딸이 무시당하는 것이며, 이는 그녀들의 불행일 뿐 아니라 아들, 아버지, 남편 등 가족에게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이를 지지하는 민법의 문제를 정권 및 시민 전체가 인식해야 한다"[67]는 주장을 폈다. 즉 가족법 조항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불행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태영은 또 가족법에 따른 동성동본 금혼제나 호주지위 상속 포기에 관한 문제 등 가족법 조항이 남성들에게 주는 피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그러나 여성 인권에 대한 주장과 비교할 때 매우 분량이 적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의 가족법 개정 운동 과정에서 이태영의 사상을 정리할 경우, 법제도상의 여성 지위 문제뿐만 아니라 그 법에 부수되는 여성의 불이익, 특히 아내, 딸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남편, 남성으로부터의 학대나 이혼과 같은 사적 측면의 문제 때문에 여성이 받고 있는 고통의 비참함을 강조하고 있다.그리고 이를 통해 남성의 우위성을 비판하고 운동의 중심적 존재로 여성을 중시하는 시각이 강해지고 있다.그러면서도 법 아래 평등이라는 높은 남녀평등 목표를 내세우면서 남성을 둘러싼 피해와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관심을 보이며 주장을

[67] 이태영 (1958).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기독교사상, 2(7), pp.46

펴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이태영의 페미니즘 사상 분석을 시도할 경우,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가족법 개정 운동 초기 과정에서 이태영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적인 남녀평등성을 기축으로 하고, 남성 문제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도 여성에 대한 억압과 가부장제적 문제를 중시하여 논리적 비중이 치우쳤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여기에서는 이 페미니즘 논리사상을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완전한 유입까지의 "도입기 패턴"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국가 및 기타 커뮤니티에서의 정치제도 도입, 주로 민주주의의 도입 형태를 설명한 미국의 정치학자 헌팅턴의 아이디어를 유용한 것이다. 헌팅턴은 독재상태가 지속된 국가나 커뮤니티에 민주주의적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즉시 그 사상이나 제도가 커뮤니티에 정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오히려 많은 경우 초기에 민주주의를 최종목표로 하면서도 사상이나 논리의 편향 등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이행기 혹은 도입기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68] 이 시사점을 통해 한국에서의 페미니즘 사상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즉 가족 법 개정 운동 초기인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전후 시기의 이태영의 논리에 보이는 사상적 특징은 "법 아래 평등"이라는 자유 주의 페미니즘과 유사하는 남녀 평등성을 기반으로 한 제도적 평등을 추구하면서도 여성 피해성 등에 대한 주장의 비중이 높은 불안정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 페미니즘 사상의 "도입기 패턴"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전후까지의 이태영의 논리사상과 이 시기의 가족법 개정운동 과정을 대조하여 평가할 때, 이태영의 사상은 운동과정에서 선진성을 가지는 한편 일정한 부족함을 갖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1950년대 이전부터 1960년대에 걸쳐 한국 여성운동의 한계점으로

[68] Huntington, S. P. (1993).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20th Century (Volume 4) (The Julian J. Rothbaum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꼽혔듯이, 이 시기 여성운동의 규모가 작았고, 운동의 목적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나 성별 불평등 문제 해결과 같은 실질적인 사회정치적 과제보다는 여성단체 회원들 간의 친선을 통한 사교적 활동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애매한 활동의 비중이 더 큰 상황이었다.이처럼 여성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태영이 운동과정을 통해 '가족법'을 중심으로 여성, 가족, 시민 전체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설명하고, 법 아래 평등과 같은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남녀의 평등성을 자신의 사상의 기축으로 삼은 것은 이후 일반 시민들 사이에 평등 개념과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태영의 사상과 주장의 위상이 당시 상황에서 크게, 일정한 영향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당시 운동 자체가 소규모하고 불안정했던 것과 비례하듯이, 이 시기 이태영의 사상이 남녀 동권성보다는 여성을 둘러싼 문제나 피해를 강조하는 경우가 더 많아 안정적이지 못했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이 불안정에 대해서는 당시 여성을 둘러싼 사회 상황과 차별이 매우 열악해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했고, 당시 이태영 자신도 여성들에 대한 변호 활동이나 인권옹호 활동에 종사할 기회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배경을 고려할 때 이태영이 남녀평등을 추구하면서도 보다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그 때문에 레디컬 페미니즘에 유사하는 남녀 분단적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이슈와 상황에 맞추어 논리 사상을 전개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제 3 절 1960년대-1970년대 연대를 통한 운동과 자유주의 페미니즘 의식으로의 변천

1970 년대 이후 가족법개정운동의 특징은 운동가와 운동 관련 단체의 연대를 통한 활동 전개와 운동 규모 확대이다. 가족법 개정을 위한 노력은 가족법 제정부터 1960 년대까지 가정 법률상담소나 YWCA

연합회와 같이 이태영을 중심으로 한 운동가들이 활동을 주도했던 소수의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1970 년대 이후 점차 운동에 참여하는 여성 단체들과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

1970 년대는 근대사회화의 큰 변동이 있었던 시기였고, 이 변화는 여성과 가족의 상황, 나아가 가족법 개정 운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이 진행되면서 지방을 떠나 서울 등 도시권에서 취업해 생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가족의 형태는 기존의 대가족형 확대 가족에서 부부와 소수의 자녀에 의한 핵가족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69]. 또한 여성들에 대한 고등교육이 보급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남편에게 종속되었던 가족들의 세력관계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과 분위기의 급속한 변화로 해방 이전부터 지속된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 시스템을 전제로 구성된 가족법이 사회 실태에 비해 매우 모순이 많은 제도라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졌다.

1972 년 유신헌법 제정 이후 군부독재 정권이 권력 강화를 위해 거듭 실시하는 긴급조치로 인해 국민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 또는 탄압받았지만 가족법개정운동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회운동에 비해 순조롭게 계속되었다. 이 기점은 1973 년 3 월 개원한 9 대 국회에서 12 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한 것이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에 다수의 여성 의원이 등장함에 따라 여성계가 이전보다 더 직접적으로 국회 등 공공기관에서 주장을 펼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가족법 개정과 여성운동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여성의원들의 등장을 계기로 가족법 제도에 대한 검토를 둘러싸고 남성 의원 등을 비롯한 정치인, 학자 등 남성 협력자가 증가하고, 남성 지지자들이 가족법 개정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는 등 가족법 개정운동이 '여성들만의 운동'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70 년대 가족법 개정 운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69] 안경희 (2014). 『가족법 개정사와 여성운동』. 이화젠더법학, 6(2), pp.97

1973 년에 탄생한 "범여성 가족법 개정 촉진회(이하:촉진회)"였다. 촉진회는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이자 국회의원으로 법안 제출권을 가진 이숙종이 회장으로 취임해 가족법 개정 운동에 대한 대중의 인지와 지지를 높이고 가족법 개정 운동을 범여성운동, 범국민운동으로 확대하는 것을 공통 목표로 결성됐다[70]. 촉진회는 여성계에서 운동을 이끌어온 여성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의 61 개 여성 단체들이 연대하는 형태로 결성되었기 때문에 이후 운동 연대와 조직화의 모델이 되었다. 또한 젊은 남녀를 중심으로 문제시되기 시작한 동성동본 금혼제도와 반강제적인 호주 상속 등 남성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남성이 참여하는 등 여성 중심적이었던 이전 운동보다 남녀가 함께 문제를 검토하고 운동을 전개하는 상황이 가능했다는 점도 획기적이었다. 바로 이 촉진회 결성을 계기로 가족법 개정운동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우선 촉진회는 전국에 지구단체를 설립하여 개정 요구 사항을 알기 쉽게 그린 포스터와 소책자 제작, 가족법 개정을 위한 사례집 발간 등을 실시하였고 시민들에 대한 가족법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가족법 개정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홍보활동과 더불어 서적 출판 활동, 잡지 등의 칼럼 집필, 전국 강연회 개최, 가족법 개정운동 지도자 육성 교육 등 개정운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활동이 진행되었다[71]. 소책자의 내용이나 강연회, 좌담회에 대해 1960 년대경까지는 주로 여성용 혹은 여성참가자를 전제로 한 것이 비중을 차지했지만, 1970 년대 촉진회 활동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이나 자녀 등에게 가족법 및 제도적 남녀차별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이러한 홍보 내용의 변화에서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나 운동가들이 시민에 대해 보다 남녀 동권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전환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70] 한국여성개발원 (1991). 『개정가족법과 가족법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p. 222

[71]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9). 『가족법개정운동60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pp.81-90

촉진회는 일반 시민을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개정을 위한 정치적 활동도 병행했다. 촉진회는 부회장으로 취임했던 이태영 등 구성원이 참여하는 가족법 개정안 작성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1 년여에 걸친 작업을 거쳐 개정법안을 완성해 국회의원과 언론사에 송부하는 등 개정 요구를 했다[72]. 이는 총 116 조 항이고, 가족법의 부분적 항목 개정이 아닌 전면적 개정을 시도한 개정안이었다[73].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가족법 개정을 위한 제안서 발송과 언론을 통한 여론 형성, 서명운동, 시위 활동 등을 통해 가족법 개정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1974 년 국회의원 발의 형태로 가족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개정안 제출 과정에서는 촉진회 내에서의 법안 내용에 관한 의견 대립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자문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개정 법 안과 사유서는 제출자가 될 촉진회 회장인 이숙종 의원 외 19 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상정을 위해 전달됐다[74]. 그러나 이숙종 의원은 촉진회 법안 원본대로 통과되기 어렵다는 현실론에 입각한 타협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호주제도와 동성동본 불혼제도 폐지 항목을 삭제한 새 수정안을 1974 년 9 월 이숙종 의원 외 19 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75].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촉진회 반발로 결국 1975 년 4 월 철회하고 수정안 원본 내용을 토대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처럼 촉진회 내부에서 내홍을 겪다가 다시 개정 원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형태로 겨우 문제가 해결됐다.

결국 국회에 제출된 가족법 개정안은 호주제를 존치하는 등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해 1977 년 12 월 개정됐다. 이 개정에서는 촉진회가 작성한 개정안이 목표로 하고 있던 호주 제도의 폐지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법정상속분에 대한 개정이나 유류분 제도의 제정, 재산의 부부 공유 규정, 친권의 부모 공동 행사, 혼인 동의 연령 등의 항목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이 1977 년에 개정된 이후 촉진회는 해산되었고,

---

[72] 이태영(1992),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pp.161-162
[73] 안경희 (2014). 『가족법 개정사와 여성운동』. 이화젠더법학, 6(2), pp.98-99
[74] 한국여성개발원 (1991). 『개정가족법과 가족법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p. 222
[75] 안경희 (2014). 『가족법 개정사와 여성운동』. 이화젠더법학, 6(2), pp.97

이후의 가족법 개정운동은 일부 여성단체와 운동가, 법학 연구자, 가족학 연구자들의 연구 분석 작업 형식으로 이행되었다.

1970 년대 이후의 가족법 개정운동 및 여성운동은 이태영을 중심으로 YMCA 등 일부 여성단체만이 활동하는 소규모 운동이었던 1950 년대부터 1960 년대의 운동과정과는 달리 여러 단체 및 남성들의 참여와 함께 운동연합조직으로서 연대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식이 확대되면서 운동의 성격이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70 년대 수정안 제출을 둘러싼 의견 대립 등 여성단체들 간의 가족법과 개정운동을 보는 입장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과 법안 폐기 등으로 가족법 개정과정에 문제가 생기자 여성단체들은 의견을 타협하거나 조정하면서 연대성을 유지하며 개정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남성들의 운동 참여도 이 시기부터 시작된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이 시기의 운동, 특히 가족법 개정안 작성과 검토, 국회 제출 및 심의 등을 중심으로 남성 지지자들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문제가 된 동성동본 금혼제도나 지위재산 상속 문제 등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들을 명확히 하고, 남녀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평등을 추구한 것은 가족법 개정 및 남녀평등을 둘러싼 문제를 범국민 이슈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1980 년대에는 남성단체가 운동에 참여하는 등 보다 큰 단위로 남성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1970 년대 이 유연하고 인권주의적인 단체 및 운동가들의 의식이 그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이태영의 사상을 보면 그의 변화를 그의 논리를 통해 읽을 수 있다. 가족법 개정 운동 초기부터 1960 년대까지의 논리 속에서 남녀의 제도적 평등을 최종 목표로 하면서도 여성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비교적 불안정성 있는 사상을 보였던 이태영은 1960 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남녀동권성이나 가족법 개정 운동과 같은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남녀 모두 행복과 이익성으로 이어지는 시도라는 주장과 의식을 보이기 시작했다. 1963 년 '가정향상과 여성의 지위'라는 주제로 가정과 가족 측면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의 중요성을 논의한 논설문에서 이태영은 한국에서 여성들이 남성에 의해 학대받거나 지배당하는 것을 허용해온 남존여비적 풍속문화와 법 제도상에서 남성에게 종속되어 무능력자로 규정되는 여성들의 제도적 불평등을 비판하면서도,[76] 그 이전에 주장에 등장하지 않았던 "남녀 불평등은 여성들만의 불행인가?"라는 시점에서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전개했다.

> "(...)사람의 행복은 남성 만이 만든다는 생각은 이미 쓸데 없지만 낡은 유물이요, 여성과 남성이 한데 어울려져야만 비로소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적인 능력이 배가 (倍加) 되는 것이다. 앞서 유엔에서 베푼 "공민 생활에 여성의 참가"라는 세미나를 통하여 "가정 생활에 있어서 여성을 열등 (劣等) 한 지위에 놓이게 한 법률이나 관습이 여성으로 하여금 공동사회에 공헌하지 못하도록 방해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 났는데, 이것은 곧 여성을 해방시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과되는 문화 발전상의 손실을 의미 하는 것이다.
>
> 앞에서도 잠시 말한 바와 같이 여성의 불행이 곧 남성의 불행을 의미하는 줄 안다면 남성들은 여성의 지위 향상에 조금도 인색치 말 아야 할 것이다.혹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여성에겐 자유와 권리를 쥐어 주어도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라느니 또는 "현재로서도 여성들은 만족하고 있다"느니 자기 편리한대로의 해석을 붙이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우리 가정의 향상은 부지하세월 (不知何歲月) 이다. 굳이 여성의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더라도 남성 자신의 행복과 온 가정의 평화를 위하고 사회발전의 동력을 늘이기 위하여 모르는 여성을 깨 우 쳐주고 이끌어서 반려 (伴侶) 해야 마땅하다."[77]

---

[76] 이태영 (1963). 『가정향상과 여성의 지위』. 새가정, 10(8·9), pp.12
[77] 이태영 (1963). 『가정향상과 여성의 지위』. 새가정, 10(8·9), pp.14

이 논리를 보면, 남성에 대한 비판성은 남아 있지만 여성들의 행복의 실현이 남성들의 행복의 실현과 연결한 것을 강조하고 또 남녀평등의 달성이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보인다. 나아가 여성들의 자각을 위해 반려해야 한다고 여성의 지위 향상 과정에 남성을 포함시키는 의식을 보인 것도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또한 이태영의 남녀평등사상의 변화는 1970 년대 들어 가족법 개정을 위한 논설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1975 년 "현행 가족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라는 논설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본래 평등하게 태어났으나 역사의 타성과 제도로 인해 불평등이 인간 전래의 질서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 왔다고 남녀 불평등성을 설명하고 가족법 개정운동의 의의를 남녀동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근래에 범여성단체적 성격을 띤 가족법 개정운동은 이러한 부정의와 비리(非理)에 가득찬 후진적인 우리 사회의 제도를 이제라도 개정하여 사회의 정의와 평등, 평화를 찾아나서겠다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 여성들 스스로의 자각이다.
>
> 이것은 또한 지금까지 소외된 역사 의 방관자이던 여성이 이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역사의 주체가 되려는 자기 각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인간과 인간의 차별 즉, 남자와 여자, 가족과 가족으로 상하 지배복종의 관계로 차별함을 지양하고 온 가족이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사랑과, 이해, 존경과 신뢰를 갖는 민주적인 가족관계로 균형을 이룬 가정을 이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다.”[78]

이태영의 1950 년대부터 1960 년대까지 딸과 아내, 여성, 아들, 남편, 남성이라는 개별 단위를 둘러싼 불평등 문제가 중심인 사상과

[78] 이태영 (1975). 『현행가족법은 개정되어야한다』. 새가정, pp.151-152

비교했을 경우, 1970 년대 이후에는 여전히 가족 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남녀 차별의 해결과 평등의 추구를 사상의 중심으로 하면서도 남녀의 "인간"단위로서의 민주적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하는 등 남녀를 분리 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같은 인간으로 설정하면서 남녀 차별이 전체적인 성격을 가진 문제라는 의식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녀의 사상적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시기 그녀의 활동에서도 사상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태영은 여성법률상담소를 통해서 여성의 법률문제, 여성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가족법 개정운동의 시작부터 10 년 이상이 지나, 이전에 거의 없었던 상담소의 남성 상담자들의 비율이 20%-30% 정도까지 증가했다.[79] 이는 동성동본 금혼 제도에 의한 커플의 문제, 호주 제도 규정에 의한 호주 지위의 상속에 관한 남성들의 고뇌 등, 가족법 규정이나 기타 가정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한 남성들이 방문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태영은 이 상황을 통해 남성들, 남편들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필요성을 깨닫고, 1966 년 자신의 상담소 명칭을 여성법률상담소에서 가정법률상담소로 변경하고 상담소 체제를 남녀 양측의 상담을 접수하는 조직으로 전환하였다.[80] 또한 동성동본 금혼제로 인해 결혼이 어려운 커플의 문제와 호주제의 원칙상속 포기가 불가능한 규정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남성 등의 존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는 등 운동의 문제 범위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문제로까지 확대했다.[81] 이에 앞서 가정법원 개설을 위해 노력한 것도 이 사상 전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 1970 년대 이후에는 남성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

[79] 이유나 (2017). 『해방후 이태영의 여성인권론과 인권, 민주화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46), pp.114

[80] 이태영(1999).『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pp.170

[81] 이태영(1992),『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pp.133-135

논설문을 집필하거나[82] 법률 상담소의 소책자에서 여자와 어린이에 대한 문제에 대처의 분량과는 반대로 남성들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비대화한 남성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장하는 등,[83]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남성들을 둘러싼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양상에서 이 시기 이태영의 남녀평등사상적 범위의 확장을 찾을 수 있다.

게다가 당시 이태영이 중심이 되어 주도했던 가족법 개정운동에 남성들의 참여를 권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의 변화 특징이다. 1970 년대에 들어서는 가족법 개정이 여성이 복종하는 집안의 질서를 부부평등, 남녀평등의 민주적 가족관계로 변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정치체제의 민주화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법 개정도 결국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84] 따라서 이태영을 비롯한 운동 주동자들도 가족법 개정운동은 여성 단체들만의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단체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1977 년 개정을 목표로 운동을 전개한 범여성 가족법 개정 촉진회에는 여성 단체뿐만 아니라 남성 민주운동가들의 협력을 권장하는 등 운동 액터로서 남성들을 포함하는 사상으로 변화하였다.

이태영도 1985 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 여성 대회의 연설에서 1977 년 개정 이후에 운동을 계승하고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여성 연합회에 1984 년까지 9 개의 남성 단체가 협력하며 참여하고 가족법 개정 운동이 "범국민 운동"에 첫발을 내디딘 것을 성과로 언급하는 등 운동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중요시하는 주장을 했다.[85] 이러한 상황을 보면 1970 년대에서 1980 년대 초반 사이에 이태영 자신도 운동에서 남성들과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1950 년대에서 1960 년대 중반까지 여성을 가족법 개정 운동이라는 사회 변화의 중심적 주체로 삼았던

---

[82] 이태영(1970),『노동자와 인권』. 새가정, pp.14-18
[83] 이태영(1999).『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한국가정상담소, pp.338
[84] 문성현(2005. 3 .30). 『[실록 민주화운동]96. 이태영과 가족법 개정운동』,「경향신문」
[85] 이태영(1999).『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한국가정상담소, pp.338

사상으로부터의 전환을 거쳤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1960 년대 이후 1970 년대까지의 가족법 개정 운동 과정에서 이태영의 사상 변화를 정리하면, 여성의 행복이 남성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처럼 가족법 문제와 남녀 불평등 해결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서 남성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시사하게 되었다.더욱이 말하자면 남녀를 같은 「인간」이라는 단위로서 동등해야 한다는 사상 기반을 강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또 운동의 중심적 존재로서 여성을 중시하던 이념에서 변화했으며 특히 1977 년 개정을 위한 운동 이후에는 운동 과정에 남성의 참여를 권유하는 데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를 종합해 이태영의 사상을 페미니즘 이론의 유형과 함께 분석하면, 1950 년대부터 1960 년대까지의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불안정성을 보였던 도입기 패턴적 사상을 거쳐 1960 년대 중반부터 1970 년대 사이에 남녀 양측의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사상과 남녀를 동등한 권리를 갖는 인간으로 취급한다는 입장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즉 그녀의 사상은 1960 년대 이후 1970 년대에 남녀 동등한 평등을 추구하고 더 그들의 협력적인 행동을 통해서 남녀 평등 실현을 목표로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상으로 강화 또는 변화한 것이다.

이런 1970 년대 전후 시기의 이태영의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유사한 남녀동등한 권리 평등을 추구하는 논리 사상과 이 시기의 가족법 개정 운동 과정을 대조적으로 평가할 때, 이태영은 이 시기의 운동 과정, 또 소장을 맡은 가족 법률 상담소의 변호사 활동을 통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포함된 불평등의 해결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연동하는 형태로 사상을 업데이트하고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태영의 사상 변화가 이 시기의 가족법 개정운동 과정에서 남성 참여자의 등장이나 남녀 양측의 문제를 검토하는 경향의 시작 등 운동 자체에서 나타난 변화와의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녀의 1970 년대 운동 과정에서의 입장 및 움직임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태영은 가족법 개정운동의 주요 단체인 범여성 가족법 개정 촉진회 부회장, 가족법 개정운동의 지도자로서 운동 참여자에 대한 지도와 더불어 주요 언론매체에서의 논설 및 발언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홍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가족법 개정운동에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대내외적으로 높였던 시기였다. 따라서 그녀의 이러한 사상 변화와 운동 조직 안팎에서 그 사상이 확산된 것이 같은 시기 발생한 여성 주체형 운동에서 남녀평등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형식으로의 운동 형태의 급속한 전환의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태영의 사상이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그 사상이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과 상호 작용하면서 가족법 개정 운동 과정 자체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제 4 장 1980년대 운동과정과 이태영의 가족론을 통한 젠더 사상 분석

제 1 절 1980년대 개정운동 과정과 논리 다양화, 차세대 운동가의 등장

1980 년대 들어 유신 체제 붕괴와 민주화 운동을 거쳐 새로 들어선 정부는 1980 년에 헌법을 개정했고 여기에 여성계와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남녀평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그리고 이 신 헌법의 규정에 입각한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86]. 한편 출범 초기부터 정부는 가족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아 정부 차원의 가족법 개정 논의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나 1983 년 5 월 정부가 UN 여성차별 철폐 조약에 서명하자 여성계는 이 국제적 변화를 가족법 개정의 호기로 삼았고, 이 유엔 조약을 비준하기 위해 성차별적인 국내 가족법 제도를 재구성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여성차별 철폐와 가족법 개정에 관한 활발한 논쟁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리고 가족법 개정과 UN 여성차별 철폐 협약에 대한 유보 없는 비준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1984 년 이태영을 회장으로 한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이하 여성연합회)" 출범과 함께 가족법 개정 운동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87]. 여성연합회는 운동을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전개하기 위해 이전에 가족법 관련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던 전국의 여성 단체들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의 인권단체들에게도 가입을 권유하는 문서와 가족법 개정사항을 발송하는 등의 확대 전략을 시행하여, 성별과 조직,

---

[86] 한국여성개발원 (1991). 『개정가족법과 가족법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p. 225

[87] 이태영(1992),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pp.222

이념을 초월한 권리를 추구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는 단체로 결성하였다[88].

또한 여성연합회는 신학자이자 신학을 통한 페미니즘과 여성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둘러싼 문제에 주목한 여성운동가 겸 인권운동가이며,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이우정 교수를 대표로 하여 1987 년 결성된 새로운 단체인 "한국 여성단체연합"이 설치한 당시의 대표적 차세대 여성운동가였던 한명숙 위원장이 주도하는 "가족법 개정특별위원회"와 협력하여 가족법 개정운동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연합단체로 공동 활동을 시작하였고, 공개질의와 기자회견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89].

이 두 단체는 1980 년대 가족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운동을 주도하는 주요 단체로 기능했지만 양측 주장과 목표가 처음부터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했다. 여성연합회는 이태영 회장을 비롯한 구세대 회원이 많고, 또한 가족법의 법률적 해석을 중요시하여 여성 단체에서 제시한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반영한 완전한 개정을 지향하는 다소 급진적인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여성단체연합은 이우정 대표나 한명숙을 중심으로 연령대가 비교적 젊고 국회의원이나 여성개발원의 직무와 겸임하는 회원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뤄지기 어려운 즉각적인 완전 개정을 추구하기보다 정권 및 의원들과 조율, 타협을 하면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개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90]

나아가 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운동가들은 여성의 진학율과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여성 문제의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한 사회 상황과 연동하여 여성 복지, 노동환경 개선, 고용 촉진, 임금 상승, 고등교육 등 여성문제에 대해 폭넓은 시각에서의 논의를 폈다. 또한 서양권에서 논의된 선진적인 페미니즘 사상을 소개하는 등 한국에서의 가정과 아내, 딸이라는 입장을 기축으로 한 기존의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는 논리의 다양화를 보였다는 점에서 가족법과 이에 부수되는 남녀 불평등 문제

---

[88]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9). 『가족법개정운동60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pp.120-121

[89] 안경희 (2014). 『가족법 개정사와 여성운동』. 이화젠더법학, 6(2), pp.114

[90] 한국여성개발원 (1991). 『개정가족법과 가족법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p. 227

해결을 주목적으로 해 온 여성연합회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 두 여성 단체 사이에는 큰 갈등 없이 오히려 가족법 개정이라는 최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호적인 양보 혹은 서로의 이념 수용을 통해 협력 관계를 지속할 것을 선택했다. 예를 들어 두 단체는 호주제 완전 폐지를 개정의 중요 목표 사항으로 설정하되 기타 조항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타협점을 공동 협의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여성연합회 측에서 활동에 참여한 운동가들도 여성단체연합의 운동가들처럼 헌법 등의 법 제도나 결혼, 재산 관리 등 어느 하나의 주제를 통한 여성문제, 남녀 불평등을 탐구하고 논의하는 기사를 홍보책자로 발표하기 시작하여 여성계 전체의 사상 및 논리의 다양화가 촉진되었다.

여성연합회는 이런 식으로 각 단체, 기관과 협력하면서 가족법 개정운동을 여성운동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과제로 확대하기 위해 회원 단체를 활용한 계몽 홍보활동과 국회의원 로비, 국회의원 면담을 통한 입법 요구, 가족법 개정안 제출, 정당 대표 면담, 대통령 청원서 제출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의원수 20 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11 대 국회에는 제출조차 되지 않았다. 더욱이 12 대 국회에는 제출됐다가 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91]. 그러나 여성연합회의 가족법 개정 추진 의원들에 대한 지지 표명과 로비 활동 등의 노력은 계속됐다. 결국 여성연합회와 여성단체연합, 여성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법안은 제 13 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어 1989 년에 국회 심의를 통과, 1991 년부터 시행되었다[92]. 여성운동계에서 국회에 제출된 가족법 개정안 원본은 호주제의 전면 폐지를 요구했으나 1989 년 개정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이 심의를 통해 수정되면서 호주제 자체가 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 가족법 제도에서 호주인

[91] 한국여성개발원 (1991). 『개정가족법과 가족법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p. 227
[92] 한국여성개발원 (1991). 『개정가족법과 가족법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p. 229

장남은 분가나 입양을 할 수 없고 호주 상속 자체도 포기할 수 없도록 돼 있던 조항이 이 개정으로 장남이라도 분가나 입양, 호주 지위 상속 포기가 가능해졌다. 이 시기의 개정운동에서는 호주 제도 자체의 완전한 폐지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없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전통적이고 매우 엄격한 제도였던 호주의 권리 의무 범위 규정이 완화되어 호주의 의무와 특권의 삭제 또는 변경 등 큰 변화가 수반되는 개정을 실현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계의 다양하고 열정적인 사회적 활동은 국회의원 및 시민 전체의 가족법 개정에 대한 인지와 남녀평등 이념 보급 등 사회 전체의 의식적 변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80 년대 가족법 개정운동 및 여성운동은 복수 단체 및 차세대 운동가의 참여와 함께 여성계에서 이념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진행되고, 운동연합조직으로서 연대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식이 확대되면서 운동의 성격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980 년대의 가족법 개정운동 과정은 구세대 운동가들이 은퇴 등으로 영향력을 점차 축소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운동가들이 대두된 시기이기도 하고, 운동 주도층에서도 세대 교체가 시작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여성연합회와 여성단체연합의 활동 방침과 이념 차이의 발생과 같이 여성 단체들 사이에는 가족법과 개정운동을 보는 입장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과 법안 폐기 등으로 가족법 개정 과정에 문제가 생기자 여성 단체들은 이념, 세대를 넘어 의견을 타협하거나 조정하면서 목표를 설정하여, 단결하고 개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또한 근대화 진행에 따른 여성의 사회 진출와 새로 유입된 서구적 평등관 등 다양해지는 남녀평등 이념과 정권교체, UN 의 여성차별 철폐 협약, “세계 여성의 해” 등 사회적 국제적 추세를 따라잡으면서, 이들을 국내 가족법 문제와 남녀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활용한 점도 이 시기 운동의 특징이다. 이처럼 1970 년대-

[93] 여성사연구회(1989)『민족민주운동과 여성운동』, 창작과 비평사, pp.48

1980 년대 가족법 개정 추진파가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연대를 유지하며 함께 노력한 것은 이후 2000 년대까지 계속된 가족법 개정운동과 한국 여성운동의 롤 모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1980년대 이후 이태영의 가족역할론을 통한 젠더 사상 분석

1980 년대 이후 이태영 사상의 특징은 가족법 개정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전환되어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남녀의 권리적 동등성을 강조하는 평등사상을 새로운 운동가들이 주도한 페미니즘 논의와 주제의 다양화와 연동되도록 "가족의 관계성과 역할"이라는 주제에 반영하여 발표한 점이다.이러한 이태영의 페미니즘 의식이 내재된 1980 년대 가족의식 사상은 남녀 생활 및 가족 관계 역학에 대한 지침을 주장하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었다.여기에서는 페미니즘 사상 분석과 동시기의 운동과의 대조적 평가 분석을 전제로, 먼저 2 장 2 절에서 다룬 Herbst(1952) 부부의 행동권력 관계 유형을 적용하면서 이태영의 가족사상 속에서의 부부상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본다.

그러나 이태영은 1990 년대에 법조인이나 여성운동에서 은퇴했고, 이번에 이 4 장의 분석 대상인 1980 년대는 그녀가 여성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도 은퇴를 앞두고 예전과 같은 활동을 서서히 축소하기 시작한 시기였다.이 때문에 분석에 사용한 이태영의 문헌 자료도 그녀가 소장을 지낸 가족 법률 상담소의 책자, 유고집 등에 한정되는 등 충분한 범위의 참고 자료가 적어 다른 시기의 분석과 비교하고 한계가 있었던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가족법 개정운동 과정에서 이태영의 가정 사상 중심 개념은 그녀가 지속적으로 언급한 "가정의 민주화"로 요약된다. 이는 가정이 사람이 태어나는 첫 번째 장소이자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입장에서 남녀가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며 그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가족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렇게 구성된 가족의 본래 모습은 가족이 인간으로서 위아래가 없고 평등하다는 주장을 대표하는 말이다.[94] 이태영은 1980 년 이 '가정의 민주화'를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

> "사회 구성의 최소 단위인 가정 내에서도 우대 받고 존중되고 보호받는 사람은 우월감을 갖게 되고 그 반대의 처지에 놓인 사람은 열등의식에 젖어 오랜 세월 지내는 동안 이 관념이 모든 사람의 의식 속에 뿌리 박히게 되어 가정 내의 불평등을 더한층 당연한 질서 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 결국 인류사회의 오랜 전통인 지배복종관계의 시작은 안방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
> 우리는 나면서부터 타고난 성별과 태어난 순서에 따라 특권과 천대가 갈라지는 인간차별의 생활과 관념이 몸에 밴 가족제도 때문에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쳐도 행동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
>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것이라면, 가족관계부터 민주화하도록 새 헌법은 가정 내에서의 인간평등이라는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사회 민주국가 건설의 지름길이다."[95]

이 '가정의 민주화'라는 말은 1960년대 이태영의 논설에도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가정운영을 중심으로 한 여성들이 남녀 불평등으로 인해 가정을 포기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가정운영의 유지를 위해 여성의 권리를 인권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강화 기반으로 사용됐다.[96] 즉 가정의

---

[94] 이태영(1999).『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한국가정상담소, pp.261

[95] 이태영(1999).『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한국가정상담소, pp.261-262

[96] 이태영은 여자들에 대한 지배와 우위를 가진 남자들에 대해 그 인습과 의식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로 "사람은 자기의 일에 불만을 느낄 때 또는 부당한 제재를 받는다고 알때 비극은 뜻밖에 아무데서나 터져 나는 것 이다. 이미 18 세기 구라파에 "노라" (입센의 "인형의 집"의 주인공)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나라에 자유부인 (自由夫人)이 생겨났고 여성들이 뒷문을 빠져나와 울밖의 물결에 휩쓸리다 보니 여성 본연의 사명을 잊거나 버림으로 해서 가정은 진짜 주인을 잃은 골이 되고 있음을 우리

중심 운영자와 실행자로서의 여성의 존재성이 강조된 것이다.

한편 1980년대 "가정 민주화" 개념은 앞서 언급한 인용부처럼 "남녀는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라는 주장과 함께 전개되었다.[97] 이태영은 이 개념을 주로 가족법 개정 계몽에 부수하여 부부나 가족의 공동적 운영으로의 전환과 관계성 구축을 장려하기 위한 사상적 기반으로 이용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이태영의 가족·부부 역할에 대한 사상은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있다. 이유나(2017)는 이태영이 이런 남녀 평등을 기축으로 한 가족상을 강조하게 된 배경으로서 이 시기에 활발한 다양한 이념을 가진 여성단체와 차세대의 운동가들과의 연대 과정에서의 이데올로기의 조정이 실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98] 더욱이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조정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중요 과제가 되어 있던 인구조정 문제나 가족법 개정 운동에 UN에 의한 "세계 가정의 해"를 활용하는 등의 방침도 이 사상의 대두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태영의 가정 역할 주장은 주로 부부가 가정 구성원으로서 가정에 공동으로 공헌한다는 "의무"와 공동적 관계성 구축이라는 "권리"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부모 양부처(賢父母 良夫妻) 주의를 실천합시다"라는 1986년 논설에서 이태영은 가정에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 "결혼식에 가면 주례사나 축사를 하는 분들이 으레 빼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 될 사람에게는 '사업에 성공하고 한 가정의 주인으로서 식구들을 잘 관리하며 밖에서는 돈 잘 벌어 영육 간에 축복 받는 인생을 꾸리라' 고 신신당부하는 한편, 아내 될

는 주변에서 허다 히 보고 있다."고 해설 했다. 이처럼 이태영은 가정에서의 역할을 여성들이 담당하는 '본래의 사명'이라면서, 남성들의 지배가 계속됨에 따라 여성들이 이를 포기하고 가정생활로부터 도피할 위험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태영 (1963). 『가정향상과 여성의 지위』. 새가정, 10(8·9), pp.11

[97] 이태영(1991). 『나의 만남, 나의 인생』, 정우사, pp.386-390

[98] 이유나 (2017). 『해방후 이태영의 여성인권론과 인권, 민주화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46), pp.123

여자에게는 우선적으로 현모양처가 되어 명실공히 여성답게 오직 어진 어머니가 되고 오직 착 한 아내로서의 본분을 다하라' 고 훈계(?)합니다.

남녀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선이 어질고 착한 행실 을 덕목으로 삼고 있다면 그 어질고 착한 행실이 당연히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똑같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현상의 근원을 찾아보면 결국 살림하고 자녀를 기르고 집안을 돌보며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일은 의당 여자에게 맡겨진 의무요, 남자는 여자의 일과는 다른, 사회적이고 공적이고 정치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당연한 특권이라는 전통적 고정관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가정에는 의당 좋은 아버지가 있어야 하며 사회에는 의당 좋은 어머니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아버지 없는 가정, 어머니 없는 사회로 몰고 가다 보니까 결국 상하주종 권위주의 일변도의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비민주적인 국가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우리의 가정에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자라지 않는데 국가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자라날 수 없지요.

그러므로 나는 동료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하고 싶군요. 남성 지배 문화의 산물인 현모양처 시대를 청산하고 현부모양부처 주의를 실천 하는 일에 우리의 지혜와 열성과 힘을 합합시다."[99]

이처럼 이태영은 '현부모 양부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부, 가족이 되는 남녀가 공동으로 가정생활에 참여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가정 민주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논설에서 이태영은 현부모 양부처가 되기 위해 가정에 대해 부부가 토론하고 합의를 거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밝혔다. [100]

이태영은 1991년 개정 가족법 시행을 앞두고 집필한 기사에서도 유

[99] 이태영(1999).『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pp.314-317
[100] 이태영(1999).『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pp.316

사한 이념 주장을 보였다. 특히 여성들을 위해 권리 이행을 게을리하지 말고, 가정에서 남성과 평등적 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각각이 주체로서 가정생활에 참여할 것을 장려하였다.[101]

이 1980년대 이태영이 논리 사상으로 명시한 가족 혹은 부부의 관계성을 Herbst(1952)의 결정과 실행에 기초한 부부의 행동 역학 관계 유형에 적용하여 검토하는 경우 부부간의 토의와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가정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특징을 통해 결정자와 실행자가 부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을 보여주는 공동 공유형(The Syncratic Pattern)에 해당하는 부부의 형태를 지향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으로 1980년대 이후 이태영의 가족관계와 역할 사상에서 공동공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자녀교육에서 부부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태영은 "도덕성 회복은 어머니 손에 달렸다"면서 범죄와 비리 방지, 불평등 방지는 가정교육에서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자녀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 어머니가 자식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102] 또 같은 시기에 자녀의 대학 입학과 교육에 대한 논설에서도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지도하는 존재로 어머니만을 언급하고 있다.[103]

이러한 논리를 볼 때 이태영은 교육적 측면에서의 핵심 결정자/실행자는 아내 혹은 어머니라고 가정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교육에 대한 이태영의 가족역할 사상을 행동 역학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유형의 4가지 유형 중 실행자와 결정자를 모두 아내가 담당하는 부인 우위형(The Wife Dominance Pattern)과 유사한 형태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전제로 이태영이 1980년대 집중적인 논의 주제로 삼으면서 이 가족·부부관계론에 반영했던 사상을 페미니즘 이론과 함께 분석한다. 이 시기의 이태영이 대부분의 논설자료를 통해 공동공유형(The Syncratic Pattern) 부부역학관계를 기반으로 한 부부간의 공동성을 지지하고 중요시

---

[101] 이태영(1999).『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pp.297
[102] 이태영(1999).『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pp.332-334
[103] 이태영(1999).『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pp.370-372

한 입장을 고려하면, 여전히 남녀의 동등하고 공동적인 권리행사 및 참여를 목표로 하는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상을 기축으로 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1980년대 전후 시기의 이태영의 가족 관계론 속에 보이는 자유 주의 페미니즘에 유사한 남녀 쌍방의 평등을 지향하는 논리 사상을 이 시기의 가족법 개정운동의 경과와 대조적으로 평가 분석한다.이번 시기에는 남녀 분단적 규탄을 피하고 남녀의 공동참여를 전제로 한 생활사회 실현을 주장함으로써 남녀 동권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또한 차세대 운동가 중심으로 확대된 개별 주제를 다루면서 페미니즘 논의를 전개하는 당시 여성계의 트렌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여기서부터 1980년대 가족법 개정운동에서의 성별이나 단체, 세대를 초월한 연대를 기축으로 한 활동방침을 이태영이 수용해 자신의 활동 및 사상에 활용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80년대에 대두하기 시작한 한명숙 등 새로운 세대의 운동가들이 페미니즘적 이슈로 다룬 주제와 비교할 경우, 이전 시기에는 선구적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존재감과 위상을 갖고 있던 이태영의 사상이 1980년대 들어 당시 사회 상황과 어긋남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1980년대 가족 법 개정 운동의 역사적 배경으로 설명한 대로 이우정, 한명숙 등 신진 운동가는 가족 법 개정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진학률과 취업률 증가에 따라 한국 여성 문제의 성질이 변화한 사회 상황에 대응하고, 여성 복지, 노동, 고등 교육, 미혼 주의 등"결혼"이나 "가정"이란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나고 사회 진출을 지향하는 여인들과 그것을 지지하는 남성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태영의 1980년대 논리사상은 여전히 '가정'이 주요 주제다. 더욱이 그녀의 가족론은 부부의 협력 관계나 자녀교육의 지침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고, 이를 고려하면 그녀의 사상 속에서 남녀 모두 인간과 "결혼"이나 "가족"이라는 개념이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물론 가족법의 남녀차별이 가정 내 차별 피해와 연동된 것이 이태영이

1950년대 가족법 개정 운동을 시작한 계기였다.그러나 1980년대에는 한국 여성들이 결혼이나 가정을 형성하는 것이 삶의 필수 요건으로 인식하지 않게 된 시기였기 때문에 신세대 운동가들도 가족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평화로운 결혼이나 가정을 위한 개정이기보다는 여성 인권 확립의 한 수단으로 가족법개정을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이 처럼 1980년대의 이태영의 가족론을 통한 남녀 평등론이 당시의 여성상과 운동의 사상과 일치하지 않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서두에 설명했듯이, 당시 이태영의 활동은 점차 한정되기 시작했고 가족법 개정 운동의 인사도 크게 전환되던 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현대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여성을 둘러싼 중심적 사상으로 대두되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성 평등 실현을 위해 수많은 운동과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운동을 주도하는 지침이 될 수 있는 주요 운동가의 사상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사상을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별 사회 상황에 맞게 적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분석은 가족법 개정운동의 시조로서 오랜 기간 운동의 주도자의 위치를 차지했으며, 여성단체 회장직 등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태영이 가족법 개정운동과 이에 부수되는 여성운동 과정에서의 논리와 행동을 통해 어떤 사상을 펼쳤으며,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에 주목했다.나아가 그녀의 사상적 변화를 각 시대의 가족법 운동 과정 자체의 목적이나 경과 등 역사적 배경과 함께 대조적으로 분석하고 당시 운동 과정에서 이태영의 위상에 대해 평가하거나 논의하는 것이다.

그녀의 사상 변천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이론적 접근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전후의 사상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하는 두 가지 페미니즘 이론 유형이다. 여기서 사용하는 유형 중 하나는 법 제도 등 공적 측면에서의 평등 실현에 주목하는 이념으로 남녀를 같은 "인간"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남성을 포함하면서 공동적인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다. 다른 하나는 여성의 "여성성"과 신체를 둘러싼 문제, 남녀관계의 종속성과 가부장제와 같은 사적 측면에서의 불평등에 주목하는 이념을 기축으로 하여 남성의 지배과 우위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지향하는 "래디컬 페미니즘"이다.

둘째로, 1980년대 그녀가 강조한 가족사상에서 보여준 가족의 권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Herbst(1952)에 의해 정의된 가정 내 사항의 결정과 실행의 상황을 기반으로 한 부부간의 행동 권력 유형을 적용한다. 이것은"누가 결정하고, 누가 실행하느냐", 즉 결정자와 실행자의 편성의 차이에 의해서 4개로 분류되는 유형이다. 그리고 이 유형은 결정자로서의 권력을 부부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점을 중시한다. 4가지 유형의 내역은 대부분의 가정 내역에서 남편이 주된 결정자가 되고 실행자가 남편 혹은 부부 공동인 '남편 우위형', 주요 결정자가 아내이고 실행자가 아내 또는 부부 공동인 '부인 우위형', 부부가 생활 영역과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결정과 실행을 하는 '자율형', 부부가 결정과 실행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 공유형'이다. 그리고 이 가족 유형 분석으로 얻은 결과를 페미니즘 이론과 함께 분석하여 그녀의 사상 파악을 시도했다.

우선 이태영 사상의 변천상을 정리하면, 운동 시작부터 일관적으로 남녀 분단적인 래디컬 페미니즘적 사상이 아니라 남녀 양측의 제도적 평등과 권리를 동등하게 추구하는 인권주의적 측면이 강한 자유주의 페미니즘적 사상을 유지해 왔다고 분석한다.그리고 이 사상은 시대별로 형태가 달랐다고 볼 수 있다.구체적으로는 가족법 개정 운동이 시작돼 운동이 확대된 1950년대와 1970년대 사이에 남녀평등 사상 측면에서의 본격적인 성장적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보완적인 분석이지만, 1980년 이후는 신세대의 운동가들의 등장과 트랜드 변화에 맞추어 남녀 평등 사상을 발전시키고 가족들 사상을 통한 남녀 평등 사상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이론적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면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이후까지 장기간 전개된 가족법 개정운동 및 여성운동에서 이태영의 논리에 나타나는 사상 변천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 무렵까지의 가족법 개정 운동 과정에서 남녀 평등성을 인식하고 이를 최종 목표로 하면서도 여성 피해에 대한 주장과 인권 획득 주장의 비중이 컸던 불안정성을 보여준 도입 패턴적 남녀 평등 사상이다. 이 시기 이태영의 논리를 정리해 보면, 법제도

상의 여성 지위 문제나 학대나 이혼 같은 사적 측면의 문제 때문에 여성이 받는 고통의 비참함을 강조하는 한편, 법 아래 평등이라는 높은 남녀 평등 목표를 내세워 남성을 둘러싼 피해와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심을 갖고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이를 종합해 보면 이 시기의 이태영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적인 남녀평등성을 기축으로 하여 남성 문제를 주장하면서도 여성에 대한 억압과 가부장제적인 문제를 중시하여 논리적 비중이 치우치는 불안정성을 보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여기에서는 이 시기 이태영의 페미니즘 논리사상을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완전한 유입까지의 "도입기 패턴"이라고 정의했다.

두 번째 단계는 1960년대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운동과정이지만, 남녀 양측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이념을 기축으로 하여 그들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취급함으로써 남성에 대한 적대성을 피하고 오히려 남녀의 협력적 행동을 통해 여성운동을 전개하려는 자유주의 페미니즘과의 유사성보다 높은 사상의 전개과정이다. 이 시기 이태영의 사상변화를 정리하면, 여성 불평등 상태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면서도 남녀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민주적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하는 등 1950년대~1960년대에 보인 논리상의 성별적 편중과 불안정성이 해소되어 사상의 성장적 발전을 나타냈다.구체적으로는 1단계에서 운동의 중심적 존재에 여성만을 한정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가족법 개정 운동 과정에 남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며 긍정적인 의식을 보였다.또한 그녀의 행동적 측면에서도 호주 상속이나 노동문제와 같은 남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 시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상적 발전이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는 1980년대 이후 가족법 개정 운동이 범국민 운동화되는 가운데 "남녀평등" 사상을 발전시키고 이상적인 가족 사상을 강조하며 가족의 관계성과 역할에 관한 이념을, 즉 남녀 관계 역학에 대한 사상을 강화한 과정이다. 이 시기 이태영의 가족의식 사상은 성별을 한정하지 않는 탈젠더적 주장이었기 때문에, 페미니즘 이론 대신 Herbst(1952)가 정의한 부부의 행동 권력관계 유형을 적용했다. 이태영이 논리 사상에서 명시한 가

족 혹은 부부의 관계성을 이 결정과 실행에 기초한 부부의 행동 역학관계 유형의 관점에서 검토할 경우, 이태영의 가족사상에서의 "부부간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의한 공동적인 가정생활에 참여"를 중시한다는 특징을 통하여 결정과 실행이 부부의 공동작업에서 이루어지는 유형을 보여주는 공동공유형(The Syncratic Pattern)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3단계에서의 예외 사례로 자녀교육에서 부부의 역할에 대한 사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태영의 이 영역에 대한 논리를 종합적으로 보면,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핵심 결정자와 실행자를 아내 또는 어머니라고 가정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 교육에 대한 이태영의 가족사상을 행동 역학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유형 4가지 유형 중 실행와 결정자를 모두 아내가 담당하는 아내 우위형(The Wife Dominance Pattern)과 유사한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전제로 이태영이 1980년대 집중적인 논의 주제로 삼으면서 이 가족·부부관계론에 반영했던 사상을 페미니즘 이론과 함께 분석한다. 이 시기의 이태영이 대부분의 논설자료를 통해 공동공유형(The Syncratic Pattern) 부부역학관계를 기반으로 한 부부간의 공동성을 지지하고 중요시한 입장을 고려하면, 여전히 남녀의 동등하고 공동적인 권리행사 및 참여를 목표로 하는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상을 기축으로 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 시대 이태영의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유사한 논리사상의 형태 변천과 각 시기별 가족법 개정 운동 과정을 대조적으로 평가하고, 그녀의 운동에 있어서의 위상을 논의한다.이에 대해서도 크게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첫 단계로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전후까지의 운동 과정을 보면, 운동 자체가 매우 소규모이고 여성간의 친선이나 봉사가 우선되는 등 가족법 개정을 포함한 실질적인 운동과 사상이 취약했지만, 이와 함께 검토해 보면 이태영과 그 사상은 일정한 부족함과 불안정성이 있었지만, 높은 선진성과 영향력을 지닌 입장이었다고 분석한다.

두 번째 단계로 1970년대 전후 시기의 운동과정과 함께 검토할 경우, 이 시기 이태영의 자유주의 페미니즘적 의식을 강화한 사상변화는 같은 시기 가족법 개정운동 과정에서 남녀 양측의 문제를 추구하고 연대를 추진하는 경향 등의 변화가 일어난 것과 높은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이 시기 이태영은 가족법 개정 운동의 주요 단체 부회장으로서 논설 및 발언 등을 통해 홍보적 역할을 하며 가족법 개정 운동에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대내외적으로 높인 시기였다. 따라서 그녀의 이러한 사상변화와 운동조직의 안팎으로 그 사상의 확대가 진행되면서 운동과정 자체의 급속한 전환의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단계인 1980년대에도 이태영이 지속적으로 자유주의 페미니즘적 사상을 유지했으며, 개별 주제를 통해 페미니즘 논의를 전개하는 당시 여성계의 논설 트렌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했다.그러나 새로 가족 법 개정 운동에 참여하고 대두되기 시작한 이우정, 한명숙 등 신세대의 활동가들이 노동, 고등 교육, 미혼 주의 등의 "결혼"이나 "가정"이란 기존 개념에서 벗어난 주제를 제기하는 한편, 이·태영은 여전히"가정"을 주요 의제로 사람들과 "결혼"혹은"가족"이라는 개념이 튼튼하게 결합되고 있다는 사상을 표명했으며 당시의 사상적 변화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이태영의 논리사상과 운동에서의 목적 또는 방침이 일정한 일치성을 보이던 1단계, 2단계와는 다른 특징을 나타냈다.그러나 이 시기, 이태영이 1990년대 은퇴를 앞두고 활동을 축소한 참고 자료도 한정적이었다는 것 또 가족 법 개정 운동을 비롯한 것 여성 운동에 참여하는 운동가 인사도 크게 전환한 시기임을 고려해야 한다.

제 2 절 연구의 의미 및 한계점

본 논문은 한국 여성운동의 출발점인 가족법 개정운동의 계기를 마련하고 주요 운동가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이태영의 가족법 개정운동

과정에서의 사상 변화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그녀의 운동활동상에서의 위상에대해 논의를 시도했다.

기존의 가족법 개정 운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족법의 변천과 가족법상의 여성 지위의 변천 및 페미니즘 운동과의 연관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이태영에 대한 기존 연구도 가족법 분쟁에 기여한 변호사로서의 공적이나 리더십 등을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 논문은 운동의 핵심인 사상적 측면에서의 이론적 접근을 통해 이태영이 가족법 개정 운동 과정에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를 거쳤는지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상"의 관점은 가족법 개정의 변천 및 한국 여성운동가의 선구자로서의 이태영의 활동 전개 과정을 향후 페미니즘 전개를 위해 표본, 지표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상의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논문은 주로 이태영이 집필·출판한 문서자료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실행한 것이며, 가족법 개정 운동의 여타 운동가들의 사상과 이태영 사상의 상관성을 밝힐 수 없었다. 특히 이태영의 사상이 같은 시기에 함께 활동했던 운동 가나 차세대 운동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상에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할 여지가 있다.

둘째로, 이 논문은 이태영의 사상 변화 과정을 주목하고 분석하였으나, 이를 향후 페미니즘 운동과 사상에 응용할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페미니즘과 추후의 남녀평등 실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인 사상 적응 모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태영 외에도 다양한 논리와 사상의 사례를 분석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국문

기념집편집위원회(1982). 『오직 한뜻으로 살아오신 우리 이태영선생님』 서울: 인물연구소

양현아 (2011), 『한국 가족법 읽기: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서울: 창비

여성사연구회(1989).『민족민주운동과 여성운동』, 서울:창작과 비평사

이태영 (1957). 『오직 한 뜻으로』, 서울: 물결.

——— (1991). 나의 만남, 나의 인생, 서울: 정우사.

——— (1992),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999).『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 이태영 유고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9). 『가족법개정운동60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개발원/김엘림(1991). 『개정가족법과 가족법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YWCA연합회(1976), 『한국 YWCA반백년』, 대한YWCA 출판위원회

——— (2006). 『한국YWCA 80년사』, 대한YWCA 80년사 편찬위원회

영문

Acker, S. (1994). “Gendered Education: Sociological Reflections on

Women, teaching and feminism",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French, J. R. P., Jr., & Raven, B. (1959). "The bases of social power. In D. Cartwright (Ed.), Studies in social powe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Huntington, S. P. (1993).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20th Century (Volume 4) (The Julian J. Rothbaum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Smith, D. M. (2012). "Poets Beyond the Barricade: Rhetoric, Citizenship, and Dissent after 1960". University Alabama Press.

일본어

Weber, M.& A. Hamashima (2012). Typen der Herrschaft(権力と支配), Kodansha.

2. 논문

국문

안경희 (2014). 『가족법 개정사와 여성운동』. 이화젠더법학, 6(2),pp.73-128,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양현아 (2006). 『호주제 폐지- 여성인권, 이태영 변호사가 남긴 유산』, 『공익과 인권』 Vol. 3, No. 1,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이유나 (2017). 『해방후 이태영의 여성인권론과 인권, 민주화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46), pp.97-13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조은경(1987). 『家族의 커뮤니케이션과 權力에 關한 機能的 理論의

接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pp. 127 – 144, 가정과삶의질학회

최미진 (2016).『 [특집: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와 오늘날의 페미니즘』, 마르크스21 16호, 마르크스21

하희정(2012).『시대를 위한 저항과 변론』.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9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영문

Herbst, P. G. (1952). “The Measurement of Family Relationships”. Human Relations, 5(1)

Lorber, J. (1997). “The Variety of Feminisms and Their Contributions to Gender Equality”. Bibliotheks- und Informationssystem der Univ. Oldenburg.

일본어

Kawashima, Y. (2000). “Feminist Thought : From Modern to Postmodern(フェミニズム理論の現在:アメリカでの展開を中心に)”, Journal of gender studies, Ochanomizu University, Vol.3, Ochanomizu University

Sun, S. (2017). The Power Relationships between Husbands and Wives : Research Review Focuses on the Process of Power(夫妻の権力関係 : 権力の過程に焦点を当てて), Bulletin of Faculty of Education(129), Hokkaido University

4.기사

국문

문성현(2005. 3 .30). 『[실록 민주화운동]96. 이태영과 가족법 개정운동』,「경향신문」

새가정 편집부 (1968). 『건전한 성장은 운명공동체인 가정의 대화에서』. 새가정 5월호(통권160호), pp.118-119, 새가정

이태영(1950. 1 .8). 『한국의 여성은 무엇을 지향하나』,「경향신문」

——— (1957). 『호주제도는 존속시킬 필요가 있읍니까?』. 새가정 10월호, 4(10), pp.68-69, 새가정

——— (1958).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기독교사상, 2(7), 44-56, 대한기독교서회

——— (1963). 가정향상과 여성의 지위. 새가정 8·9월호, 10(8·9), 10-15, 새가정

——— (1965). 여성과 독서. 새가정9월호 통권130호, 14-16, 새가정

——— (1970). 『노동자와 인권』. 새가정 12월호(통권 188호), 14-18, 새가정

——— (1974). 『미래사회에서의 남녀평등』. 새가정 12월호(통권 232호), 124-126, 새가정

——— (1975). 『현행가족법은 개정되어야한다』. 새가정 5월호(통권 237호), 151-153, 새가정

4.WEB 페이지

영문

Rampton, M. (2020, July 13). “Four Waves of Feminism”. Pacific University. https://www.pacificu.edu/magazine/four-waves-feminism, Accesed 2021.4.10

Soken-Huberty, E. (2021, February 28). Types of Feminism: The Four Waves. Human Rights Careers.

https://www.humanrightscareers.com/issues/types-of-feminism-the-four-waves/#:%7E:text=Three%20main%20types%20of%20feminism,dominated%20spaces%2C%20and%20promoting%20equality, Accesed 2021.3.8

일본어

Heibonsha World Encyclopedia(世界大百科事典) (2009). Women’s Movement(女性運動). In Heibonsha World Encyclopedia (2). https://kotobank.jp/word/%E5%A5%B3%E6%80%A7%E9%81%8B%E5%8B%95-1175556, Accesed 2021.3.12

Abstract

Lee Tai-young's Thought Changes in the 1950s-1980s Family Law Reform Movement

Hinako Takahashi
Korean Studies Maj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contemporary society, feminism has emerged as a major ideology concerning women's identity, and many movements and controversie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improvement of women's social status and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In this process, the ideology of key activists has been treated as an important theme that can serve as a guideline to lead the movement. Historically, these ideas have been adapted and continuously changed to suit the social conditions of each era.

This analysis is based on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feminist ideology Lee Tai-young, a major activist of feminism in early Korea and a leader of the Korean Family Law Reform Movement, had and how her ideology changed. This analysis assumes that Lee Tai-you

ng underwent changes in her conception of gender equality while con tinuing to grow ideologically in line with the process of the movemen t and changes in social conditions. Based on this assumption, I analyz ed the process of her ideological trans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 his analysis of her ideological transition, I will examine the process o f the Family Law Movement of each era and its historical background, and evaluate and discuss Lee Tai-young's position in the process of the movement at that time.

Lee Tai-young experienced a growth and development in the aspect of gender equality ideology that was particularly significant b etween the 1950s and 1970s when the movement to revise the Famil y Law began in earnest. And from the 1980s onward, she expressed her feminist ideology through family ideology and family theory essa ys in a way that developed her gender equality ideology. Although he r method of expressing her ideas has undergone a major shift, her c ore ideas have remained unchanged from the 1950s to the 1970s.

In the family law reform movement and the women's moveme nt that developed over a long period from the 1950s to the 1980s, th e ideological transition process that appears in Lee Tai-young's logic can be divided into three major stages.

In the first stage, Lee Tai-young maintained the liberal femini st stance and pursued institutional equality for both men and women as the basic goal of the family law reform movement from the 1950s to the 1960s, but she prioritized issues concerning women over issu

es concerning men and showed instability in her logical and ideologic al bias. In this paper, I define Lee Tae-yong's feminist logical though t during this period as the "introductory pattern" before liberal femini sm was fully established.

During the second stage, around the 1970s, Lee Tai-young st rengthened the idea that human rights issues of both men and wome n should be given equal attention and resolved, and took a position in favor of developing the women's movement through cooperative acti ons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movement process. Such a chan ge can be seen as the establishment of liberal feminist thought and it s growing development after the instability of the introductory phase in the first stage.

In the third stage, from the 1980s onward, as the movement t o revise the Family Law spread and young activists presented new t hemes, Lee Tai-young also shifted from simply advocating equality b etween men and women to advocating ideas through family theory th emes such as the family couple. When examining her family ideology by the theory of marital relations, it is analyzed as falling under "Th e Syncratic Pattern", in which decisions and actions are made jointly by the husband and wife, in that it emphasizes jointness through suffi cient discussion and agreement between them. When examining this a s a feminist ideology, it can be assumed that Lee Tai-young's ideolo gy was still based on liberal feminist ideology that aimed at the equal and joint exercise of rights and participation of men and women, tak

ing into account the position tha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m munality between husband and wife.

Furthermore, if we contrast and evaluate Lee Tai-young's ide ological changes in each period and the process of the Family Law R eform Movement, we can divide her position in the movement into th ree major stages.

Looking at the first stage of the movement from the 1950s to the 1960s, it can be analyzed that Lee Tai-young's ideology was hi ghly advanced and influential, although it was lacking in certain aspec ts and unstable, in a situation where the scale of the movement to re vise the Family Code itself was very small and the construction of id eology was weak.

In the second stage, when examined together with the movem ent process around the 1970s, Lee Tai-young's ideological changes t hat strengthened her liberal feminist views during this period are hig hly consistent with her tendency to promote gender solidarity in the process of the Family Law Reform Movement of the same period. At that time, her position and influence as the vice president of the Fa mily Law Reform Movement increased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and it is possible that her ideological change influenced the movemen t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and became the policy basis of the movement process itself.

In the third stage, the 1980s, Lee Tai-young continued to mai ntain her liberal feminist ideology and flexibly adapted to the changin

g editorial trends in the women's world at the time. However, while t he new generation of activists raised themes that went beyond the tr aditional concepts of "marriage" and "family," Lee Tai-young continue d to use "family" as her main theme, expressing the idea that people and the concepts of "marriage" and "family" were definitely connecte d. This shows a different feature from the first and second stages w here Lee Tai-young's logical thought and the movement's objectives or policies showed a certain consistency. However, i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the 1980s was the period when Lee Tai-youn g reduced her activities in preparation for her retirement in the 1990 s, her reference materials were limited, and there was a turnover in the number of activists participating in the women's movement, includ ing the movement for the revision of the Family Law.

Keywords : Lee Tai-young Feminism Feminist Family Law Reform Movement

Student Number : 2019-29155